

성과감사

감사 보고서

-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

2018. 5.

감사원

목 차

제1장 감사실시 개요.....	1
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1
제2절 감사범위와 방법	1
제2장 감사대상 현황.....	4
제1절 농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4
제2절 농산물 안전관리 주요업무.....	6
제3절 축산물 안전관리 주요업무.....	6
제3장 감사결과.....	7
제1절 감사결과 총괄.....	7
제2절 사전 안전관리 분야.....	8
제3절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분야.....	51
제4절 위기대응 분야.....	87
[별표].....	97

표 목차

[표 1] 분야별 감사초점.....	2
[표 2] 농축산물 안전 관련 소관 부처 및 법령 현황.....	5
[표 3] 축산물 안전 관리 체계.....	5
[표 4] 부처별·분야별 지적사항.....	7
[표 5]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 요약.....	7
[표 6]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민간인증기관 현황.....	9
[표 7] 친환경 축산물 인증 현황.....	11
[표 8]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자 행정처분 현황.....	11
[표 9] HACCP 적용업소 현황.....	13
[표 10]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현황.....	13
[표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 현황.....	13
[표 12] 친환경 인증심의관 임명일 전 3년간 인증심사 미수행자 명단.....	16
[표 13] 친환경 인증기관 임직원 친환경 인증 관련 업체 중복 재직 현황.....	17
[표 14] 2016년 GAP 인증 심사원 연간 심사 농가 수 명세.....	19
[표 15] GAP 인증기관 중복 취업자.....	20
[표 16] 2015년 이후 잔류물질 검출 현황.....	24
[표 17]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 주요 내역.....	28
[표 18] 농약 품목 등록 현황(2017년 6월 기준).....	32
[표 19] 농약 품목 등록 취소 현황.....	32
[표 20] 잔류물질 검사 실적 및 위반 현황.....	33
[표 21] 연도별·축종별 항생제 판매실적.....	34
[표 22] 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중 시료 기준별 농약 등록 및 미등록 현황.....	37

[표 23] 패러콧(Paraquat)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비교.....	40
[표 24] 연도별 농약 직권등록시험에서 약효·약해시험 적합 비율.....	43
[표 25] 일반적인 농약 직권등록과 2018년 계획된 농약 직권등록 비교.....	45
[표 26] 안전성 조사 유형별 목적 및 실적(2016년).....	52
[표 27] 최근 다소비 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 추이.....	53
[표 28] 유통농산물 수거검사 현황.....	54
[표 29] 수입농산물 검사 유형 및 실적(2015년).....	54
[표 30] 도매시장 개설자 및 허가권자.....	55
[표 31] 시·도별 잔류농약 검사 가능 성분 개수.....	59
[표 32] 수입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현황.....	63
[표 33] 농약다성분 분석법의 연도별 검사항목수 변화 추이.....	64
[표 34] 수입 농산물 잔류농약 58종의 검사수수료 현황.....	65
[표 35] 농수산물 도매시장별 출하제한 미이행 내역.....	67
[표 36] 관리시스템과 이력시스템 연계 방안.....	70
[표 37] 원산지 표시 단속 관련 정보 활용 현황.....	76
[표 38]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및 공표 등 처분 현황.....	78
[표 39]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위반정보 공유 현황.....	78
[표 40] 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 누락 명세.....	80
[표 41] 수품원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 누락 명세.....	81
[표 42]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 누락 및 과징금 부과대상 미인지 명세 ...	82

그림 목차

[그림 1] 식품안전관리업무추진체계 및 법적 근거	4
[그림 2] 농산물 단계별 안전관리업무 담당 부처	5
[그림 3] 농약 안전사용 관리 체계	35
[그림 4] 농약의 등록 절차.....	43

제1장 감사실시 개요

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최근 계란 및 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농축산물에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에게 언제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축산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감사원은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농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목적으로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성과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제2절 감사범위와 방법

1. 감사대상기관과 범위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2014~2017년)의 농축산물 사전 안전관리 분야,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분야, 위기대응 분야 등 3개 업무 분야 전반을 감사범위로 설정하였다.

2. 감사초점 및 분석방법

이번 감사는 3개 감사분야를 대상으로 6개의 감사초점을 설정한 후 감사초점별로 심층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감사분야별 감사초점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야별 감사초점

<p>사전 안전관리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인증, HACCP 등 각종 인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p>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물질 기준을 초과한 농축산물에 대한 출하유통 방지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원산지 위반 단속이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p>위기대응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정보를 사전에 수집·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 위기 발생 시 매뉴얼 등에 따른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각 분야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친환경 인증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심사한도를 준수하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농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잔류농약 검출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이 잔류농약 분석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조사물량을 선정할 때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 위주로 선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기대응 분야”에서는, 2017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수집한 위해정보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여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와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하였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현황과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7. 9. 29.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연구보고서와 통계자료 및 국회 논의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 후 2017. 10. 24.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감사 방향과 분석방법을 구체화하였고, 12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하여 2017. 11. 20.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2017. 12. 15.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축산환경복지과장, 감사담당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인증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개최하여 감사중점별 분석결과를 논의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18. 4. 26.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제2장 감사대상 현황¹⁾

< 범 례 >

이하 다음의 약칭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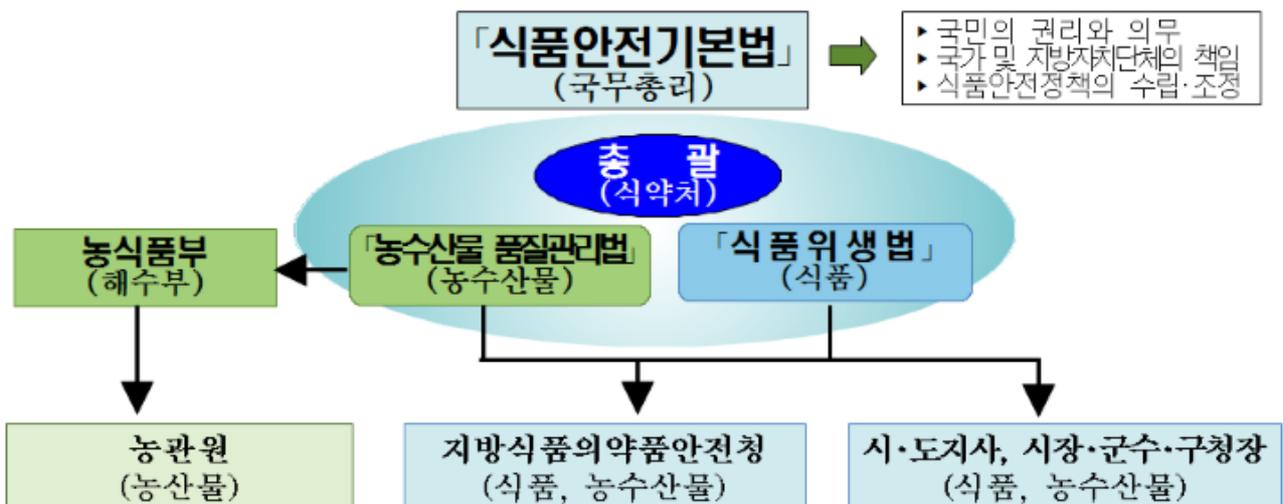
[기관명]

-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 ▶ 농촌진흥청: 농진청
-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평원
- ▶ 해양수산부: 해수부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품원

제1절 농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식약처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농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각각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식품안전관리업무 추진체계 및 법적 근거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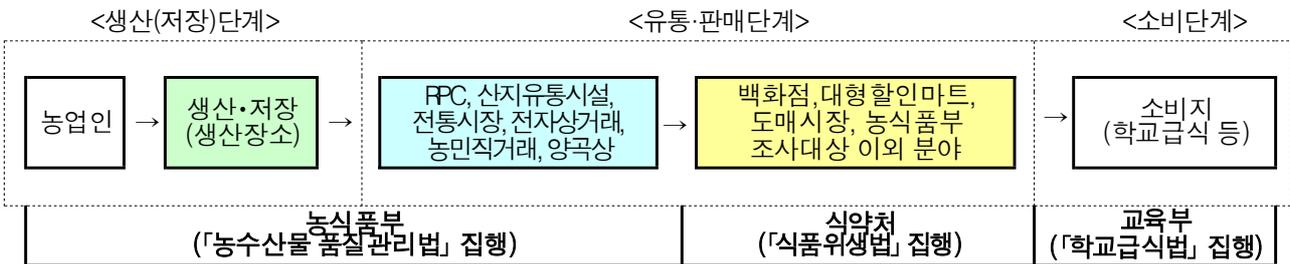
[표 2] 농축산물 안전 관련 소관 부처 및 법령 현황

구분	소관 부처	규정명	주요 내용
식품 안전관리 기본 규정	국무조정실 (식약처)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
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	식약처	「식품위생법」	▪ 국내·수입 식품(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 및 식품 안전성검사, 위생시설 관리 ▪ 식품 사고 발생 시 처리(회수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국내농산물의 안전성 허용기준 초과 여부 조사
축산물 안전관리	식약처 (농식품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물의 생산, 가공 등 과정 전반 관리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농산물의 경우, 농식품부가 생산 및 일부 유통·판매 단계를, 식약처가 유통·판매 단계를, 교육부가 학교급식 등 소비단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림 2] 농산물 단계별 안전관리업무 담당 부처



주: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는 산물 상태의 미곡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축산물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는 농식품부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표 3] 축산물 안전 관리 체계

구분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수입	가공	유통	소비
총괄	식약처	식약처/지방자치단체			
집행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				

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생산단계 관리업무는 농식품부 위탁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제2절 농산물 안전관리 주요 업무

농관원 등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내 생산·유통되는 농산물 등에 잔류 농약(320성분 이상), 중금속 및 병원성 미생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안전성 조사 업무²⁾를 수행하고 있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토양·수질·농약 등의 적정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수확 후 위생시설을 갖춘 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할 경우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 및 우수관리 인증³⁾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농관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이 생산된 국가·지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를 단속⁴⁾하고 있다.

제3절 축산물 안전관리 주요 업무

검역본부 등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 유통단계에서 축산물에 항생제, 농약 등의 잔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⁵⁾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약 6,500여 품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⁶⁾하고 있다.

2) 안전성 조사 건수 : 2012년 79천 건 → 2013년 87천 건 → 2014년 91천 건 → 2015년 90천 건 → 2016년 76천 건

3) 인증 현황(2017년 7월) : 인증기관 수(51개), 인증건수(6,781건), 인증농가 수(79,334호)

4)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 : 2014년 4,290개소 → 2015년 4,331개소 → 2016년 4,283개소

5) 2016년 검사실적: 151,162마리 검사, 위반 375마리(위반율 0.25%)

6) 2009년~2015년 1,776개 품목 평가: 유효인정 1,197개, 미인정 42개, 자진취하 등 537개

제3장 감사결과

제1절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는 농축산물 안전관리 분야별 실태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사전 안전관리 분야”,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분야”, “위기대응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총 31건의 제도 개선 및 주의요구 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4] 부처별·분야별 지적사항

구분	합계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농관원	농진청	검역본부	기타
사전 안전관리 분야	11	4	1	-	3	3	-	-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분야	18	2	1	1	2	-	1	11
위기대응 분야	2	2	-	-	-	-	-	-
합계	31	8	2	1	5	3	1	1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표 5]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 요약

분야	감사결과
사전 안전관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 생산 환경, 절차 관리)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직원 자격요건 미달, 1인당 심사건수 과다,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사후관리 부실 ■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남용방지) 미등록 농약 관리·감독 부실,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대비 미흡, 동물용 의약품 허위 처방 단속 미흡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농약, 잔류항생제 등 조사) 농산물 안전성 조사 계획의 효율성 부족, 지방자치단체 잔류농약 검사 항목 개선대책 미흡 ■ (원산지 위반 단속) 도매시장 농산물 출하제한자 지정·관리 부실, 단속기관 간 위반자료 공유 및 활용 미흡으로 비효율적 단속
위기대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물 위해정보 수집 및 대응) 식용란 살충제 성분 검출 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등록한 이후에도 위기대응시스템 미작동 ■ (위기발생시 대응 및 수습) 식용란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부적정

제2절 사전 안전관리 분야

초점1 친환경 인증, HACCP 등 각종 인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주요 점검대상]

①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관리의 적정성

인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증심사가 공정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요령」(농관원 고시, 이하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이라 한다)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농관원 고시, 이하 “GAP”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이라 한다) 등에서는 민간인증기관에 소속된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요건, 연간 심사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②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의 적정성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증농가에서 출하되는 가축에서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이를 위해 인증 농가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및 잔류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위반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③ 사육밀도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사육밀도 기준은 동물복지와 가축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밀식사육 방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최소 사육면적으로서 합성농약 및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의 필수 인증기준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민간인증 기관으로 하여금 인증농가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게 하고, 농관원은 이를 관리·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사육밀도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사후관리의 적정성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이라 한다)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업소가 인증 이후에도 인증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

7)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하는 등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는 HACCP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수시 조사·평가⁹⁾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를 단속·적발하여 행정처분한 후 식약처에 통보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점검대상 업무현황

1. 친환경 인증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표 6]과 같이 2017년 11월 말 현재 친환경 인증 관련 민간인증기관은 총 64개 기관,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민간인증기관은 총 52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농관원에서는 친환경 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 대하여 각각 반기별 1회, 연간 1회씩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표 6]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민간인증기관 현황

(단위: 기관 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11월
친환경 인증기관	69	66	64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44	46	52

자료: 농관원 제출자료 재구성

- 8) 정기 조사·평가: HACCP 적용업소와 조사·평가 일정 등에 대해 미리 협의 및 사전 통보한 후에 정기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면서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평가대상 총항목 대비 준수항목을 백분율로 환산)이 85% 이상은 적합, 미만은 부적합으로 판정하고(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1차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및 60% 미만은 인증취소),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속·적발하여 행정처분한 것으로 식약처에 통보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정기 조사·평가 시 반영하지는 않음
- 9) 불시에 수시 조사·평가: 2016년에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속·적발하여 행정처분한 것으로 식약처에 통보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HACCP 적용업소와 조사·평가 일정 등에 대해 사전 협의 및 통보 없이 불시에 수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 평가 시 감점 조치하는 등 조사·평가에 반영

한편 감사원에서 2014년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통하여 친환경 인증 제도 등을 도입한 이후 인증면적 증가 등 양적으로는 급성장하였으나 민간인증기관 등록을 매우 쉽게 설계하고도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은 느슨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민간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부실인증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부실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2017년 8월과 9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하여 친환경 인증 제도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와 친환경 인증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49개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의 위반사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7년 11월 인증기관 평가를 통한 부실기관 퇴출 등 인증 기관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인증기관 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2.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는 유기 축산물 인증제도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유기 축산물이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 사료”를 급여하면서 항생제·성장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사육·생산한 축산물을 의미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이란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설정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사육·생산한 축산물을 의미한다. 유기 축산물 인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으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 도입되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인증건수는 매년 6,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출하량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7] 친환경 축산물 인증 현황

(단위: 건, 호, 천 두, 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6,088	6,170	6,713
농가수	8,275	7,799	8,223
사육두수	157,611	145,342	166,176
출하량	738,362	831,638	1,058,250

자료: 농관원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검역본부는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는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위 시스템으로 각 시·도 관할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의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및 출하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인증기준 위반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농관원은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 및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무항생제 축산물 등 친환경 축산물의 인증과 인증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인증 사후관리 과정에서 농약사용 위반 등 인증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자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위반 인증기준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사육밀도	17	8	2	7	소 14, 돼지 2, 닭(산란계 알) 1

위반 인증기준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경영 관련 자료	87	82	2	3	소 84, 돼지 2, 닭 1
농약사용	239	120	58	61	소 179, 돼지 23, 닭 26, 오리 6, 메추리 2, 산양 3
동물약품사용	91	47	23	21	소 46, 돼지 31, 닭 13, 오리 1
인증정보 표시	4	3	-	1	소 3, 닭 1
기타	78	22	32	24	소 72, 돼지 1, 닭 4, 오리 1
계	516	282	117	117	-

자료: 농관원 자료 재구성

4.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HACCP은 식품·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95년에 도입하였고, 축산물 HACCP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식품 HACCP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관리해 오다가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7년 6월 기준 전체 HACCP 적용업소 수는 [표 9]와 같이 16,091개소이며 [표 10]과 [표 11]과 같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단속·적발된 HACCP 적용업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9] HACCP 적용업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식품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수	16,091	4,676	11,415 ¹⁾

주: 1. 농식품부에 위탁한 농장 7,168개소, 사료 184개소, 도축업 148개소, 집유업 65개소 포함

2. 2017년 6월 기준

자료: 식약처 자료 재구성.

[표 10]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HACCP 적용업소 수	3,029	3,734	4,358	4,676
법 위반 업체 수	160	187	239	137
이물검출 업체 수	67	65	90	45
표시기준 위반 업체 수	34	33	14	23
기준규격 위반 업체 수	5	15	31	7
영업자 준수사항등 기타 위반업체 수	54	74	104	62

자료: 식약처 자료 재구성

[표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HACCP 적용업소 수	2,776	3,192	3,724	3,850 ^{주)}
법 위반 업체 수	165	81	86	67
이물검출 업체 수	21	5	12	12
표시기준 위반 업체 수	32	5	13	10
기준규격 위반 업체 수	49	21	23	18
영업자 준수사항등 기타 위반업체 수	63	50	37	27

주: 2017년 6월 기준 전체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11,415개소 중 농장 7,168개소, 사료 184개소, 도축업 148개소, 집유업 65개소는 농식품부 위탁에 따라 제외

자료: 식약처 자료 재구성

문제점

[요약]

- 민간 인증기관 소속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요건 미달, 1인당 심사건수 과다 등에 대한 관리 미흡
- 인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 인증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발견
-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접속권한 한계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 위반 농가 조회 불가능
- 사육밀도 기준 위반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 미흡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HACCP 적용업소 사후관리 기준 불합리

1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관리 부적정

농관원은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 및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 인증¹⁰⁾ 인증기관¹¹⁾ 지정기준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및 GAP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¹²⁾(이하 “GAP 인증”이라 한다) 인증기관¹³⁾ 지정심사 기준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가. 친환경 인증기관 인증심의관 자격 관리 부적정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관으로

- 10)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 가능한 농업 추구,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관리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과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무농약 생산물 등에 대한 인증
- 11)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농관원장이 친환경 인증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
- 12)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관리기준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 관리, 유통하는 자에 대한 인증
-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관원이 GAP 인증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

하여금 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증심의관은 농업 등 관련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근¹⁴⁾ 심사원 경력 3년 이상을 그 자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인증과 유사한 GAP 인증의 경우 인증심의관의 자격 요건으로 최근 3년간 인증심사 및 심의를 30건 이상 수행할 것을 그 자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인증심의관이 다수의 인증심사원이 작성한 심사서류를 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심사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관원은 GAP 인증에서와 같이 친환경 인증에서도 인증심의관의 자격에 실제 심사 경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1. 20. ~ 12. 15.) 중 상근 심사원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이 된 총 50명에 대하여 인증심의관 임명일 전 인증 심사건수를 점검해 본 결과, [표 12]와 같이 주식회사 ○○의 상근 인증심의관 인 ㄱ은 2017년 3월부터 위 인증기관에 상근 인증심의관으로 재직 중이나 인증심의관 임명 전 최근 3년간 상근 심사원으로서의 심사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총 12명¹⁵⁾은 인증심의관으로 임명되기 전 최근 3년간 상근 심사원으로서의 심사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4) 법령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농관원과 인증기관에서는 4대 보험을 납부해주는 정규직 직원은 '상근', 4대 보험을 납부해주지 않는 비정규직 직원은 '비상근' 직원으로 운용하고 있음

15) 이들 인증심의관이 속한 인증기관 총 11개 중 9개 기관은 2017년 친환경 인증기관 특별점검 결과 인증심사업무 등을 잘못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표 12] 친환경 인증심의관 임명일 전 3년간 인증심사 미수행자 명단

연번	이름	재직 인증기관명	상근/ 비상근 여부	인증심의관임명일자
1	ㄱ	주식회사 ○○	상근	2017. 3. 24.
2	-	-	비상근	2016. 10. 21.
3	-	-	비상근	2016. 10. 14.
4	-	-	비상근	2017. 6. 8.
5	-	-	비상근	2014. 6. 2.
6	-	-	비상근	2017. 7. 13.
7	-	-	상근	2016. 10. 13.
8	-	-	비상근	2016. 10. 21.
9	-	-	비상근	2015. 2. 25.
10	-	-	비상근	2017. 6. 19.
11	-	-	상근	2016. 6. 13.
12	-	-	상근	2016. 11. 17.

자료: 농관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농관원은 GAP 인증과 달리 친환경 인증의 경우 실제 심사 경험이 없는 인증심의관이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인증심의관 자격에 실제 심사경력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나. 친환경 인증기관 임직원의 이해 상충업무 겸직에 대한 관리 부적절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대표, 이사, 감사 등 임직원(이하 인증기관에 근무하는 대표, 이사, 감사, 인증심의관, 인증심사원을 의미함)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기자재 등 제조·유통·판매, 유기농산물 등의 유통·판매, 유기농산물 등의 인증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관원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 입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관원은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농기자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판매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인증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전체 64개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소득 상위 50명을 선정하여 친환경 인증 관련 업체에 중복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해 본 결과, [표 13]과 같이 친환경 인증기관인 유한회사 □□의 이사인 ㄴ은 농자재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 △△에 중복 취업하는 등 총 3개 인증기관, 3명의 임직원이 친환경 인증 관련 업체에 중복 취업하고 있었다.

더욱이 2017년 3월 위 ㄴ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인증기관인 유한회사 □□가 이 사 ㄴ이 중복 취업하고 있는 법인 △△에 대한 친환경 인증 갱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친환경 인증기관 임직원 친환경 인증 관련 업체 중복 재직 현황

연번	이름	재직 인증기관명	직책	중복 재직업체명	중복 재직업체업무
1	ㄴ	유한회사□□	이사(비상근)	법인 △△	농자재 제조 판매 등
2	-	-	심의관	-	친환경농산물 유통
3	-	-	심의관(비상근)	-	친환경농축산물 식품제조

자료: 농관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농관원은 인증기관 임직원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판매 등을 수행하는 업체에 중복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있어 인증업무가 공정하게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 GAP 인증기관 인증심사원 한도 관리 부적정

GAP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상근 인증심사원은 연간 1,000 농가, 비상근 인증심사원은 연간 500 농가 이하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은 인증심사원 1인당 심사·관리 농가 수가 너무 많으면 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을 소홀히 하는 등 인증심사원의 심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농관원은 인증 심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이 연간 심사 가능 농가 수를 준수하여 심사하였는지 여부를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6년에 처리한 GAP 인증 심사실적을 대상으로 인증기관 인증심사원이 1인당 한도를 초과하여 심사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해 본 결과, [표 14]와 같이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비상근 인증심사원 ㄷ은 2016년 중 연간 한도 500농가를 591농가만큼 초과한 1,091 농가를 심사하는 등 인증심사원 9명¹⁶⁾이 연간 적게는 452건 많게는 903건의 심사한도를 초과하여 심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6) 이들 인증심사원이 속한 인증기관 총 4개 중 3개 기관은 2016년과 2017년 중 농관원에서 실시한 인증기관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 인증심사 업무 등을 잘못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표 14] 2016년 GAP 인증 심사원 연간 심사 농가 수 명세

(단위: 농가)

연번	이름	재직 인증기관명	심사농가수	한도	비고(농관원 인증기관 점검결과)
1	ㄷ	주식회사 ▷▷	1,091	500	인증기준 잘못 적용으로 2016년 11월과 2017년 7월 농관원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 받음
2	-		1,064	500	
3	-		1,080	500	
4	-		1,027	500	
5	-		1,004	500	
6	-	-	1,762	1,000	인증기준 미점검으로 2017년 7월 농관원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 받음
7	-	-	1,903	1,000	인증 소홀로 2017년 11월 농관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취소 처분 받음
8	-		1,452	1,000	
9	-	-	1,545	1,000	

자료: 농관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농관원은 인증기관 소속 인증심사원이 연간 심사 가능 농가 수를 준수하여 심사하는지 여부를 사후 점검·관리하지 않고 있어 인증심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라. GAP 인증기관 임직원 겸직관리 부적정

GAP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증기관 대표, 이사, 감사는 인증심의관을 겸할 수 없고,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임직원이 인증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GAP 인증과 유사한 친환경 인증의 경우¹⁷⁾ 공정한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상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른 인증기관에서 근무형태(상근 혹은 비상근)에 관계없이 겸직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17) 농관원에서 2016. 10. 17. 각 친환경 인증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업무연락한 '심의관 자격 요건 관련 전달사항'에 근거

이는 인증기관 대표, 이사가 다른 인증기관에서 심의관 등으로 근무하면 인증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상근 심사원(심의관)이 다른 인증기관에서 비상근 심사원(심의관)으로 겸직하여 근무하게 되면 상근으로 재직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심의) 업무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에서와 같이 GAP 인증에 대해서도 인증기관 대표, 이사 등이 다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상근 심사원(심의관)에 대해서는 다른 인증기관에 중복 취업을 제한하는 등 겸직금지의무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개 이상의 GAP 인증기관에 중복 취업한 임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본 결과, [표 15]와 같이 ▽▽ 주식회사의 상근 대표이사 ㄹ은 주식회사 ◁◁과 법인 ◇◇에 각각 비상근 심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5명¹⁸⁾이 2개 이상의 인증기관에 중복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GAP 인증기관 중복 취업자

연번	이름	재직 인증기관명	근무형태	재직기간	비고(농관원 인증기관 점검결과)
1	ㄹ	▽▽주식회사	상근 대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주식회사 ◁◁	비상근 심의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인증기준 위반으로 2017년 11월 6개월 친환경 인증업무정지
		법인 ◇◇	비상근 심의관	2017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인증기준 위반으로 2017년 11월 6개월 친환경 인증업무정지
2	-	-	비상근 심의관	2017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	상근 심의관	2017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	-	-	상근 대표	2011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인증기준미점검으로 2017년 7월 농관원 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받음
		-	비상근 심의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8) 이 사람들이 중복 취업한 인증기관 9개 중 6개 기관은 2017년 농관원에서 실시한 인증기관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 인증 심사 업무 등을 잘못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연번	이름	재직 인증기관명	근무형태	재직기간	비고(농관원 인증기관 점검결과)
4	-	-	비상근 심의관	2017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	상근 심사원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인증기준 잘못 적용으로 2017년 7월 농관원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받음
5	-	-	상근 대표	2012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인증기준 위반으로 2017년 11월 친환경 인증업무 시정명령
		-	비상근 심의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인증기준 잘못 적용으로 2017년 7월 농관원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받음

자료: 농관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농관원은 GAP 인증기관 임직원의 겸직 가능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¹⁹⁾ 중복 취업한 임직원이 GAP 인증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독립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농관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친환경 인증심의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GAP 인증심사원이 심사한도를 초과하여 심사할 수 없도록 하며 인증기관 임직원이 다른 인증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중복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 ① 친환경 인증심의관의 자격기준에 인증 심사실적을 포함하는 등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을 개정하는 방안과 친환경 인증기관 임직원이 친환경 인증 관련 업체에 중복 취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인증심사원이 연간심사 한도를 초과하여 심사하지 못하

19) 인증기관에서는 한 인증기관 내에서만 대표, 이사 등이 심사원과 심의관을 겸직할 수 없고 다른 인증기관에서의 겸직은 명시된 규정이 없어서 모두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

도록 인증기관 인증심사원의 심사한도를 점검·관리하고 인증기관 임직원의 겸직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 활용 미흡

농관원은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제24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인증사업자가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3] 제3호 및 제40조 제1항 [별표 11] 제3호 등에 따르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의사 관리하에 사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17-102호)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 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 및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1조 제2항 [별표 8]에 따르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각 시·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경우 관할 구역 내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하여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감사원에서도 2014년 2월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증농가를 관리하도록 통보²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검역본부에 위 시스템 접속권한을 요청하여 위 시스템에서 위반농가를 조회한 후 이를 각 지원에 통보하여 각 지원으로 하여금 위반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하는 등 해당 시스템을 인증농가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 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인증농가의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본 결과 농관원은 일반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농가만 조회할 수 있고, 일반 축산물 기준에는 적합하나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을 초과하여 잔류물질이 검출된 농가 명단은 조회할 수 없게 시스템 접속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기준에 위배된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위반 가축을 출하한 농가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 위반 농가도 조회가능하도록 검역본부에 해당 시스템 접속권한을 추가로 요청할 필요가 있는데도, 감사원 감사종료일 현재(2017. 12. 15.)까지 검역본부에 잔류물질 검출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접속권한 확대 등의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에서 현재 조회할 수 있는 일반 축산물 기준 위반 농가만을 각 지원에 통보하고 있었다.²¹⁾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기간 중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위 시스템에서 추출하여 농관원 자료와 대사하여 분석한 결과 [표 16]과 같이 2015년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위 시스템상 189개 인증농가에서 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의 1/10을 초과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되었으나, 2015년 이후 53개 농가에 대해서는 통

20) 친환경 인증 축산물 관련 정보 공유체계 미구축(시행일 2014. 2. 21.), 관계기관: 농관원

21) 경기도의 경우 자체 인증제도인 G마크 인증에 친환경 인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문으로 농관원에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농가를 별도로 통보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통보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었음

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2015년 이후 잔류물질 검출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 1/10 초과 농가수(A)	66	68	55	189
통보 농가수(B)	58	42	36	136
미통보 농가수(A-B)	8	26	19	53

자료: 농관원 및 검역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별표 1]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서 출하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결과 인증기준 초과 내역”과 같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口 등 53개 인증농가에 대하여 인증취소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농관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향후 동물용 의약품이 일반 축산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와 함께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농가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에 접속권한 확대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별표 1]의 53개 인증농가들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상에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위반 농가도 조회 가능하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스템 접속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사육밀도 기준 위반 친환경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부적정

농관원은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및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위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사업자 등에게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유기 축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가 축사의 사육밀도 기준(「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에서 정한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17-32호, 2017. 6. 3. 개정)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에 따르면 유기 축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는 농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에서 정한 인증기준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장 등은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과정에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진 793개 가금 농장 중 사육밀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초과사육분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 33개 농장에 대하여 살처분 시점에 유기 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별표 2] “사육밀도 기준 위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 현황”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농장(농장주 ㅂ) 등 29개 농장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농관원과 인증기관은 해당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의 인증 사후관리 과정에서 사육일지 등 경영관련 자료 또는 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증기간 중 사육밀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살처분 보상금 지급업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로부터도 위와 같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의 사육밀도 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감사종료일인 2017. 12. 15.까지도 위 29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들은 친환경 축산 관련 중요 인증기준의 하나인 사육밀도 기준을 위반하고도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그 중 화성시 소재 ♠♠농장(농장주 ㄸ) 등 2개 인증사업자는 인증기간이 만료되

지 않아 해당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농장(농장주 ㄴ) 등 26개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갱신(24개)하거나 신규(2개) 인증을 받아 계속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개 사업자(포천시 소재 ♣♣농장, 농장주 ㄹ)만 인증기간이 만료된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농관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과정에서 사육밀도 기준을 초과하여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 29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케이지형 사육시설을 갖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육밀도 기준 준수여부 등 인증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육 밀도 준수 여부 등 인증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사육밀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별표 2]의 29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거쳐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인증취소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사후관리 기준 불합리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48조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HACC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고시 제2017-80호, 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하고, 농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기 조사·평가는 HACCP 적용업소와 조사·평가 일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 및 통보한 후에 실시하기 때문에 HACCP 적용업소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

실제 [표 17]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단속·적발하여 행정처분한 후 식약처에 통보한 사항 중 HACCP 적용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주요 내역에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장 위생기준 위반 등과 같이 사전 협의 및 통보에 따른 정기 조사·평가 방식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 17]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 주요 내역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주요 내역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주요 내역
1. 기준규격 위반 2. 표시기준 위반 3. 이물검출 4.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타 위반(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품목제조변경 미보고,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	1. 기준규격 위반 2. 표시기준 위반 3. 이물검출 4.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타 위반(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영업장 위생 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냉동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보관, 대장균 검출, 유통기한 경과 식육가공품 폐기용 미표시, 축산물 제조연월일 허위표시, 제품명 및 원재료명 또는 배합비율 허위표시, 이력번호 표시 위반, 종업원 위생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

자료: 식약처 자료 재구성

따라서 불시에 점검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려운 사항의 경우에는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 평가 시 감점 조치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인증기준 제15조 제2항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수시 조사·평가(이하 “불시 조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1. 20. ~ 12. 15.) 중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HACCP 적용업소²²⁾에 대해서 정기 및 불시 조사·평가에 위반사항이 반영되는지 여부에 따른 부적합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별표 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조사·평가 현황” 과 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한 총 339개 업소 중 부적합으로 판정된 업소는 23개로 부적합 비율이 6.8%였으나,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반영하여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한 총 309개 업소 중 부적합으로 판정된 업소는 총 61개로 부적합 비율이 3배 가까이 상승한 19.7%인 것으로 나타나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단속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별표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조사·평가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 불시 조사·평가가 아닌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한 총 140개 업소 중 부적합으로 판정된 업소는

22) 농식품부에 인증업무를 위탁한 농장, 사료, 도축업, 집유업은 제외

총 9개(부적합 평가비율 6.4%)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등 관리가 취약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도 사전 예고된 정기 조사·평가뿐만 아니라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 의견 식약처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와 마찬가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하여도 불시에 수시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 불시에 수시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주요 점검대상]

①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파악된 잔류농약 검출내역 자료 활용의 적정성

농관원은 출하유통 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조사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사자료를 통해 농가에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 잔류농약검출내역 자료가 농진청, 식약처 등의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② 품목 등록이 제한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적정성

농진청은 위해성 있는 농약에 대한 품목 등록을 제한하고 있고, 식약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해성 있는 농약의 품목 등록을 제한하여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도 함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는 위해성을 사유로 품목 등록이 제한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적정한지 점검하였다.

③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대비 추진업무의 적정성

식약처는 2016. 12. 31.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고, 2019. 1. 1.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는 PLS 제도 시행 대비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④ 동물용 의약품 허위 처방 단속의 적정성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동물용 의약품이 허위로 과다하게 처방되어 오·남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행정처분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가 가축을 직접 검안하지 않고는 진료 및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기존의 허위 처방 단속 방식이 적절한지 및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허위 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여지는 없는지를 점검하였다.

점검대상 업무현황

1. 농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결과

농관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제61조, 제68조 제3항 등에 따라 매년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 안전성 조사 분석결과에는 시료의 품목 및 농약 검출성분, 검출치 등이 구분 표시되어 있어, 농진청은 위 잔류농약 검출 자료를 통해 오·남용되는 농약의 실태조사 및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농진청고시 제2017-42호)을 위반한 경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품목등록이 제한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진청은 농가가 「농약관리법」 등에 따라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된 농약 품목·성분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며, 미등록 농약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표 18]과 같이 2017년 6월 현재 등록된 농약 품목 수는 1,917개이며, [표 19]와 같이 지난 10년간 총 38건의 농약 품목을 직권으로 등록취소하였다.

[표 18] 농약 품목 등록 현황(2017년 6월 기준)

(단위: 개)

품목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계
제조	519	451	519	132	1,621
수입	106	97	66	27	296
계	625	548	585	159	1,917

자료: 농진청 자료 재구성

[표 19] 농약 품목 등록 취소 현황

(단위: 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9월말	계
직권취소	안전성재평가	1	-	8	11	3	3	-	-	1	-	27
	허위 등록 등	6	-	-	-	-	-	-	2	-	3	11
자진취하	재등록미신청	37	71	59	317	17	41	38	37	213	19	849

자료: 농진청 자료 재구성

한편, 식약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3.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농진청에서 등록을 위해 의뢰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2016. 12. 31.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라 한다)²³⁾를 시행하고 있고, 2019. 1. 1.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4.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는 연초 수립하는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에 따라 시·도 축산물 출하·도축 단계에서 항생제, 성장호르몬, 농약 등 잔류물질 156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표 20]과 같이 최근 3년간 위반율은 0.21~0.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0] 잔류물질 검사 실적 및 위반 현황

(단위: 두, %)

구분	연간계획	검사실적	위반 두수(위반율)	계획 대비 검사비율
2014년	100,000	199,218	416(0.21)	199
2015년	100,000	152,142	350(0.23)	152
2016년	100,000	151,162	375(0.25)	151

자료: 검역본부 제출자료

23)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해 일괄기준 0.01ppm(mg/kg)을 적용하는 제도

*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기준(CODEX), 유사 농산물 기준 등을 적용

한편, [표 21]과 같이 2010년까지 90만 kg 이상을 유지하였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2011년 사료를 통한 항생제 투약 중단조치를 시행한 2013년까지 약 76만 kg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3년 수의사 처방제 도입 후 일시적으로 항생제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약 92만 kg에 달하고 있어, 항생제 오·남용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 연도별·축종별 항생제 판매실적

(단위: kg)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소	93,533	60,344	53,908	55,061	62,839	61,282	68,639	68,161	66,668
돼지	653,304	542,726	574,178	452,775	441,020	371,995	423,535	474,598	496,197
닭	196,534	141,759	147,008	131,072	123,862	118,580	106,491	122,667	122,142
수산용	193,523	178,370	203,490	239,316	227,928	213,235	241,855	200,933	235,776
계	1,136,894	923,199	978,584	878,224	855,649	765,092	840,520	866,359	920,783

자료: 한국동물약품협회 자료 재구성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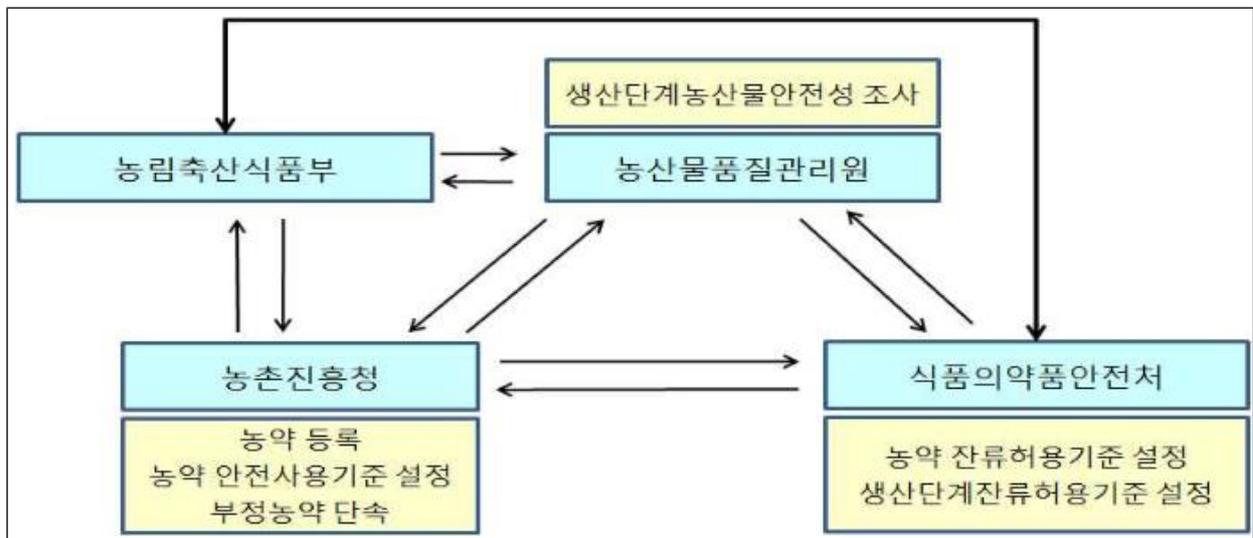
[요약]

- 농진청, 농관원, 식약처 간 업무 협조 미흡으로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및 농약사용 교육 등이 미흡
- 농진청이 위해성 등을 사유로 사용을 금지한 농약에 대해 식약처는 잔류허용기준을 존치
-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대비 관계기관 협조체계 미흡, 농약 직권등록사업의 지연 추진
-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자료를 동물용 의약품 허위처방 단속 등에 활용 미흡

1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파악된 잔류농약 검출내역 자료 활용 부적정

농진청은 「농약관리법」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제23조(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 등) 및 제40조(과태료) 등의 규정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농약의 등록 및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고 농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이를 위반한 농약 사용자에게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림 3] 농약 안전사용 관리 체계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제61조(안전성조사)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약처 소관) 제4항, 제32조(농식품부 소관) 제11항 등에 따라 식약처장은 안전성 조사 기능 중 일부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고, 농식품부장관은 농관원장에게 이를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를 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가 식약처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설정한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정보시스템(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이하 “SafeQ”라 한다)에 입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안전성 조사 분석결과에는 시료의 품목 및 농약 검출성분, 검출치 등이 구분 표시되어 있어 SafeQ의 잔류농약 검출 자료와 농진청의 농약품목 등록 현황 자료를 서로 비교(대사)하면 해당 농산물의 경작자가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에 위배되게 농약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진청은 주기적으로 농관원 SafeQ의 잔류농약 검출 자료 등을 통보받거나, 두 기관 간의 전산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이를 통해 도출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오·남용되는 농약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작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예방교육 및 사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4년부터 2017. 10. 31.까지 농관원 SafeQ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출 자료와 농진청의 농약품목 등록 현황 자료를 대사하여 농약사용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표 22]와 같이 2014년부터 2017. 10. 31.까지 농관원의 안전성 조사결과 기준치 이하로 농약이 검출되어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시료 238,953건 중 20,602건 (8.6%)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시료로 분석되는 등 해당 농산물의 경작자가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도록 하는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2] 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²⁴⁾ 중 시료 기준별 농약 등록 및 미등록 현황

(단위: 건)

안전성 조사결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적합	등록 및 불검출	65,489	59,868	53,072	39,922	218,351
	미등록 ^{주)}	5,874	4,905	4,870	4,953	20,602
	소계	71,363	64,773	57,942	44,875	238,953
부적합	등록	227	267	182	190	866
	미등록	960	917	925	1,014	3,816
	소계	1,187	1,184	1,107	1,204	4,682
총계		72,550	65,957	59,049	46,079	243,635

주: 현재는 해당 농약이 미등록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격 기준(CODEX), 유사 농산물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적합, 부적합 판정

자료: 농진청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농진청은 농관원으로부터 SafeQ의 잔류농약 검출 관련 부적합 내역만을 통보받고 있고 농관원도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상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농산물의 경작자, 품목, 잔류농약 검출 내역 등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목별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배하였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해당 농산물의 경작자가 농약의 오·남용 등을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농진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주기적으로 농관원 SafeQ의 잔류농약 검출 자료를 통보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화하고, 두 기관 간의 전산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잔류농약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활용하도록 개선하며,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 및

24) 농관원의 안전성 조사 중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출 건수임. 전체 안전성 조사의 조사대상은 농산물, 농지, 용수 등이고,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는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병원성미생물 등이 있음

홍보를 강화하고, 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 잔류농약 검출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약 사용자에 대한 실태 조사, 과태료 부과,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농약 품목 등록 제한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간 연계 부적정

농진청은 「농약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농약 품목 등록을 취소하고 있고, 2013. 6. 28.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진청 고시) 제3조 제3항 제16호 관련 [별표 8의2] “품목 등록이 제한되는 농약”을 신설하여 위해성이 판명되어 이미 등록이 취소된 이피엔(EPN), 파라티온(Parathion), 패러콧(Paraquat) 등²⁵⁾ 85개 농약성분에 대해 등록을 제한²⁶⁾하였다.

그리고 식약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하여 유통단계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다.

25) 이피엔: 살충제 농약, 담황색 분상결정체로 주로 사과, 배, 감귤 등에 사용되었음

파라티온: 살충제 농약, 황색 또는 암갈색 액체로 주로 벼에 사용되었음

패러콧: 제초제 농약, 무색 또는 담황색 결정성 고체로 거의 모든 식물에 사용되었음

26) 「농약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

한편 식약처와 농진청은 식품 중 잔류농약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3. 9. 30.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분기별로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회의를 개최²⁷⁾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와 농진청은 서로 협의하여 품목 등록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이 적합으로 판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용 금지된 농약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수입식품 등에 적용하기 위해 유통단계 잔류허용기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규격(CODEX, 이하 “CODEX”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농진청은 2013. 6. 28. 위해성이 판명되어 이미 등록이 취소된 85종의 농약성분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는 고시를 하면서 해당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거나 재평가하도록 식약처에 요청하지 않았고, 식약처는 농진청의 요청이 없었다는 사유로 [별표 5] “품목 등록이 제한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내역”과 같이 위 85종의 등록취소된 농약성분 중 이피엔(EPN) 등 9종의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지 않은 채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에서 계속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농관원의 2016년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이피엔(EPN) 등 9종의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아래 사례와 같이 「농약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된 이피엔(EPN) 등 9종의 농약성분을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더라도 농관원의 안전성 조사 시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27) 2014년 4회, 2015년 4회, 2016년 5회, 2017년 4회

경우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처리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었다.

사례

- 농관원 충남·논산사무소는 2016. 9. 1. 논산시에 거주하는 자이 생산한 머위의 시료를 수거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EPN이 검출(0.025mg/kg)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치 0.05mg/kg 이하라는 사유로 적합 판정
- 농관원 경기지원은 2016. 2. 15. 군포시에서 유통 중인 부추의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파라티온(Parathion)이 검출(0.017mg/kg)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치 0.3mg/kg(당해 성분 소분류 최솟값) 이하라는 사유로 적합 판정

또한, 식약처는 위 85종의 농약성분 중 50종(이피엔(EPN) 등 9종 포함)의 성분에 대해서는 수입 농산물 등에 적용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유지하면서 CODEX 등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 시 위 50종의 농약성분 중 표본으로 독성이 높은 패러콧(Paraquat²⁸)에 대해 설정된 10개 식품의 국내 잔류허용기준을 CODEX와 비교해 본 결과, [표 23]과 같이 1개(면실) 농산물만 CODEX보다 낮고 쌀 등 4개(쌀, 수수, 옥수수, 호프) 농산물에 대해서는 CODEX보다 잔류허용기준이 2배~17배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표 23] 패러콧(Paraquat)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비교

(단위: mg/kg)

연번	식품명	식약처 기준	CODEX
1	쌀	0.5	0.05
2	수수	0.5	0.03
3	옥수수	0.1	0.03
4	호프	0.2	0.1
5	면실	0.2	2.0
6	채소류	0.05	0.05

28) 유럽연합 등에서 해당 농약이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었는데, 이러한 위해성은 국내에도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고, 급성독성이 높고 불가역적인 독성과 해독제·치료제가 없다는 사유로 2011. 11. 23. 직권으로 품목 등록이 취소되고, 2013. 6. 28. 품목 등록 제한 고시됨

연번	식품명	식약처 기준	CODEX
7	해바라기씨	2.0	2.0
8	감자	0.2	-
9	고추	0.1	-
10	대두	0.1	-

자료: 식약처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식약처와 농진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피엔(EPN) 등 9종의 농약성분은 등록이 제한되어 국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농약이므로 해당 농약의 토양 잔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품목 등록이 제한되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50종의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농촌진흥청장은 서로 협의하여 이피엔(EPN) 등 9종의 농약성분은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유통단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패러콧(Paraquat) 등 50종의 농약성분은 CODEX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대비 추진업무 부적정

농진청은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농약의 등록 및 기 등록된 농약의 타 농산물에의 적용을 위한 직권등록(이하 “농약 직권등록”이라 한다)

업무를 하고 있고, 2013. 9. 30. 식약처와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협약을 맺고 이후 PLS 제도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농진청에서 등록을 위해 의뢰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2016. 12. 31.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PLS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9. 1. 1.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PLS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개별 농산물²⁹⁾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일괄적으로 거의 불검출 수준인 0.01ppm(mg/kg)으로 강화되어 현재에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소면적 재배 농산물인 엽채류 및 엽경채류 등³⁰⁾의 부적합률이 더욱 증가³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시 그간 농진청과 식약처가 PLS 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한 업무를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농약 직권등록사업 지연

농진청의 농약 직권등록은 [그림 4] ‘농약의 등록 절차’에서와 같이 농약 제조업자가 거쳐야 하는 여러 시험 중 약효·약해시험, 잔류성시험을 거쳐 이루어지고, 그간 농진청의 일반적인 농약 직권등록시험의 경우 1년차에 약효·약해시험에서 적합한 것으로 검사된 농약에 한하여 2년차에 잔류성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29) 2018. 4. 12. 현재 총 357개 농작물 중 138개 작물에 대해 최소 1개 이상의 농약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219개 작물은 농약이 등록되어 있지 않음. 한편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산물은 CODEX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음

30) 엽채류: 배추, 상추, 시금치 등과 같이 잎을 이용 목적으로 하는 채소
엽경채류: 파, 아스파라거스, 미나리 등 잎, 꽃, 잎줄기를 식용하는 채소

31)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농관원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 분석 및 예측(PLS 도입 전→후): 상추(3.8%→13.3%), 시금치(7.7%→21.8%), 쪽파(9.9%→24.9%), 미나리(4.1%→18.6%)

[그림 4] 농약의 등록 절차



자료: 농진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이번 감사 시 약효·약해시험의 적합판정 비율을 분석한 결과, [표 24]와 같이 최근 3년간 농진청에서 추진한 농약 직권등록시험에서 약효·약해시험 적합 비율은 약 74%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약효·약해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26%에 대해서는 잔류성시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4] 연도별 농약 직권등록시험에서 약효·약해시험 적합 비율

(단위: 회, 건, %)

연도	구분	약효·약해시험 횟수(A)	적합건수(B)	부적합 건수(C)	적합률(B/A)
2015년		120	100	20	83
2016년		388	283	105	73
2017년		277	198	79	71
계		785	581	204	74

자료: 농진청 자료 재구성

또한 농진청은 PL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3. 9. 30. 식약처와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 협의체」 협약을 맺고 이후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14. 4. 23. ‘2014년 제1차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 협의체 회의’에서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PLS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나머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6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논의를 해 왔다.

따라서, 농진청은 2019. 1. 1. 모든 농산물에 대한 PLS 제도 전면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작물그룹별 농약 직권등록을 하더라도 약효·약해시험, 잔류성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최소 2년이 소요되므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에 병·해충별로 작물을 그룹화하고, 그룹별 대표작물의 약효·약해시험과 잔류성시험 그룹화 및 대표작물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전에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늦어도 2017년부터는 약효·약해시험에 착수하여 잔류성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약에 대해서 까지 잔류성시험을 하는 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농진청은 PLS 전면도입이 1년밖에 남지 않은 2018년에서야 농약에 대한 그룹별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면서 약효·약해시험과 잔류성시험을 불가피하게 동시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뒤늦게 대응하였다.

그 결과 [표 25]와 같이 2018년에 농약 직권등록을 완료하더라도 약효·약해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약에 대해서도 잔류성시험을 하게 되어 예산³²⁾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충분한 시험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32) 23억 원(잔류성시험 예산 90억 원 × 부적합 비율 26%)

[표 25] 일반적인 농약 직권등록과 2018년 계획된 농약 직권등록 비교

구분	일반적인 농약직권등록	2018년 계획된 농약직권등록
시험절차	(1년차) 약효·약해시험 (2년차) 잔류성시험	(1년차) 약효·약해시험 및 잔류성시험 동시 수행
장점	▶약효·약해시험에 적합한 것만 잔류성시험을 실시하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간내 최대한 많은 농약 직권등록 가능
단점	▶농약직권등록 지연	▶약효·약해시험의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잔류성시험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예산낭비 불가피 ▶농약직권등록사업 관리 및 결과의 질적 하락 우려

자료: 농진청 자료 재구성

나.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 부적정

식약처가 PLS 제도 도입을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개별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괄적으로 0.01ppm(mg/kg)으로 설정하게 되면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등록과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교육을 담당하는 농진청, 농산물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성 조사를 담당하는 농관원, 그리고 항공방제용 농약 사용 후 주변 농작물에 대한 영향조사 등을 담당하는 산림청 등의 업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PLS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추진 시 농식품부, 농관원,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PLS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반영에만 주안점을 두고 농진청과 2013. 9. 30.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협약을 맺고, 이후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해 오는 등 농진청만을 협의부처로 판단하면서도 위 협의체에서 PLS 도입보다는 신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 개별기준안 설정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고, 농식품부, 농관원, 산림청 등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부처간 협조를 통한 PLS 제도 도입 준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식약처가 2017. 8. 7. 기준 미설정 농약의 일률기준(0.01ppm(mg/kg) 이하) 적용 원칙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데 대하여 농진청은 2017. 10. 10. 식약처에 ‘2019. 1. 1.에 PLS 제도 전면도입을 할 경우 농산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 농산물 종류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의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수준이 PLS 전면시행에 필요한 수준까지 확대되지 않아서 국내 이행준비에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5년 동안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검토의견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산림청은 임산물의 경우 산림청 소관인데도 PLS 제도 도입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다가 전면시행을 1년 앞둔 2018. 1. 26.에서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19.1.1.) 관련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관원은 2017. 9. 26. 농식품부 및 농진청에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안전성 조사 112,674건 중 110,132건에 대한 분석 결과 PLS 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PLS 도입 전보다 부적합률이 평균 3.3%에서 8.8%로 2.7배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된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하였으나 농식품부는 2017. 10. 12. PLS 도입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예정대로 PLS 제도가 도입되어도 부적합률은 현행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등 관계기관들마저도 PLS 전면도입에 각각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PLS 제도 도입 준비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농진청은 2018년 농약 직권등록을 위한 약효·약해 및 잔류성시험을 동시에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험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농약 직권등록시험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도관리, 평가, 전문교육, 컨설팅 등 시험설계 단계부터 완료까지 시험수행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식약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19. 1. 1. PLS 제도의 전면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약처가 주축이 되어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기적으로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앞으로 기등록된 농약의 타 농산물에의 적용을 위한 직권등록사업을 지연 추진하여 관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PLS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하는 등 PLS 제도 도입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동물용 의약품 허위 처방 의심사례에 대한 단속 미흡

농식품부는 「약사법」 제85조 및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7-43호)에 따라 동물용 항생제는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수의사법」 제30조 등에 따라 수의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서는 진단서·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3개월, 2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6개월, 3회 이상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제192호) 제22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수의사의 전자처방전 발급 시스템인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스템에는 전자처방전의 발행일자 및 발행시간, 발행 수의사의 면허번호, 농장주 이름 및 주소, 축종, 성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처방 의심사례 등을 추출하여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동물병원의 「수의사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의사들이 가축을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통해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 시스템의 처방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2017년의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별표 6] “허위 처방 의심사례 명단”과 같이 28명의 수의사가 여러 지역에 산재한 농장을 단시간 내에 방문³³⁾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허위 처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 수의사 ㄸ의 경우 2017. 1. 2. 17:17 충남 청양 소재 농가에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한 후 3분 뒤인 17:20 전북 익산 소재 농가에도 처방하는 등 2017년에만 여러 시·도에 소재하는 농가에 대한 10분 이내 진료·처방이 217회나 되는 등 허위 처방 의심
- 수의사 ㄷ의 경우 2017. 1. 2. 17:00 충북 괴산 소재 농가에 처방 후 1분 뒤인 17:01 경기 용인 소재 농가에도 처방하는 등 2017년에만 여러 시·도에 소재하는 농가에 대한 10분 이내 진료·처방이 190회에 이르는 등 허위 처방 의심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위 시스템을 2013년 수의사 처방제 도입과 동시에 구축 및 도입하고서도 이를 활용하여 동물병원의 허위 처방 의심사례를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농식품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상에 단기간 내 장거리의 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난 수의사(28명)에 대해서는 조사 후에 진료없이 허위 처방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의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수의사법 개정(현재 국회 계류 중)을 통해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의 발급 의무를 부여한 후에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허위 처방 발급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3) [별표 6] “허위 처방 의심사례 명단”과 같이 10분 이내 타 시·도 소속 농가를 방문하여 처방한 사례로 한정

조치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용 의약품 허위 처방 등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제3절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분야

초점3

잔류물질 기준을 초과한 농축산물에 대한 출하·유통 방지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요 점검대상]

① 농산물 안전성 조사 계획 수립의 적정성

농관원 등 관계기관은 출하·유통 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물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조사대상 품목 등을 선정할 때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 위주로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개선대책의 적정성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시험·분석기관이 잔류농약 분석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와 분석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③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대상 성분의 적정성

농산물 안전성 조사단계에서 모든 농약성분을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성분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분석대상 성분은 분석 기술수준·비용·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고, 분석이 필요한 성분을 분석대상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의 유통단계 및 수입 농산물의 통관단계 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대상 성분이 적절하게 선정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④ 도매시장 농산물 출하제한자 지정 및 관리의 적정성

도매시장 개설자는 출하제한자의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출하제한자의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출하되었는데도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 사실을 몰라 해당 도매시장 법인 및 출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출하제한 지정 및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였다.

⑤ 축산물 잔류위반농가³⁴⁾에 대한 규제검사의 적정성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약처 고시)에 따라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된 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에 대하여 검사완료 시부터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와 축평원은 잔류위반농가가 ‘양도’한 가축(소)에 대하여 규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검역본부)과 쇠고기이력시스템(축평원)을 연계하여, 시·도 검사기관이 동거가축 확인에 활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잔류위반농가가 양도한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점검대상 업무현황

1. 농산물 안전성 조사 실태

농관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제61조, 제68조 제3항 등에 따라 매년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조사³⁵⁾는 조사목적, 대상 등에 따라 “생산단계 등 안전성 조사”, “잔류실태 조사”, “농업정책지원 조사” 등 3개 유형³⁶⁾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표 26]과 같이 2016년 안전성 조사 총 77,515건 중 부적합건수는 1,182건으로 부적합률은 1.5% 수준이다.

[표 26] 안전성 조사 유형별 목적 및 실적(2016년)

(단위: 건, %)

유형	조사 목적/조사대상 선정 기준	조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안전관리 (생산단계 등 안전성 조사)	(목적) 농약, 중금속 등의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의 출하, 유통 방지 (선정기준) 다소비농산물, 취약품목	15,808	587	3.7

34)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및 규제검사 결과 유해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

35) 안전성 조사의 조사대상은 농산물, 농지, 용수 등이고,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는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병원성 미생물 등이 있음

36) 안전성 조사 유형 수 및 명칭의 연도별 변화: 안전관리, 위험평가, 정책지원, 업무지원 등 4개(2016년), 생산단계 등 안전성 조사, 잔류실태 조사, 농업정책지원 조사 등 3개(2017년)

유형	조사 목적/조사대상 선정 기준	조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위험평가 (잔류실태 조사)	(목적) 농산물 등의 농약 잔류수준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선정기준) 다소비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선정	22,946	417	1.8
정책지원 (농업정책지원조사)	(목적) 친환경 인증농가, 수출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정책 지원 목적 (선정기준) 친환경 인증품, 쌀직불금 신청농가 등 농식품부가 요청하는 품목	32,977	159	0.5
업무지원 ^{주)}	(목적) 학교급식, 소비자단체 요청품목 등 외부기관의 검사 요청에 대응 (선정기준) 학교급식 납품 농산물 등	5,784	19	0.3
계	-	77,515	1,182	1.5

주: 2016년의 '업무지원' 유형이 2017년부터 '농업정책지원조사' 유형으로 통합

자료: 농관원 제출자료

한편, 위험평가(잔류실태 조사)에서는 다소비 농산물(58종)의 농약성분 잔류허용기준 위반율(이하 “잔류농약 부적합률”이라 한다)을 조사하고 있는데,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표 27]과 같이 2014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표 27] 최근 다소비 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잔류농약 부적합률	2.7	3.2	3.4

자료: 농관원 제출자료

한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초 “식품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식약청에서 실시한 유통단계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28]과 같이 연도별 부적합률은 생산단계보다 낮은 수준이나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 유통농산물 수거검사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조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조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지방식약청	2,989	17	0.57	4,085	36	0.88	4,415	13	0.29
지방자치단체	51,448	502	0.98	50,359	652	1.29	51,157	664	1.30
계	54,437	519	0.95	54,444	688	1.26	55,572	677	1.22

자료: 식약처 제출자료 재구성

2. 수입농산물 검사 현황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별표 9] 및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수입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검사로 구분되어 있다.

2015년 농산물 수입신고 건수는 [표 29]와 같이 총 60,688건이며, 이 중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수입 건은 총 137건으로 부적합률이 0.226%로 나타났다.

부적합 137건 중 117건(85%)이 정밀검사에서 발견되었는데, 정밀검사는 전체 수입신고 60,688건 중 9,628건(15.8%)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9] 수입농산물 검사 유형 및 실적(2015년)

(단위: 건, %)

유형	내용	건수	부적합	부적합률
서류검사	신고서류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	17,583	1	0.006
현장검사	제품의 색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	31,809	12	0.038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최초수입 식품 또는 위해정보 등에 의한 검사	9,628	117	1.215
무작위검사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해 식약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	1,668	7	0.420
합계	-	60,688	137	0.226

자료: 식약처 제출자료

3. 도매시장 농산물 출하제한자 지정 및 관리실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 및 허가권자는 [표30]과 같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³⁷⁾를 통해 출하제한자를 지정·관리하는 등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30] 도매시장 개설자 및 허가권자

구 분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민간인
허가권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지사	시·도지사
개소 수	공영도매시장 ^{주)}	10개소(서울가락, 부산염곡 등)	23개소(구리, 수원, 안산 등)	3개소(안양, 상주, 영주)
	일반법정도매시장	1개소(노량진수산)	11개소(서울양재동 양곡 등)	-

주: 공영도매시장(중앙·지방도매시장 33개소)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공사가 관리·감독하고 있음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문제점

[요약]

-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선정 시 우선순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합률이 낮은 품목을 조사하는 데 과도한 행정력 소비
-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노후 등으로 식약처가 지정한 항목보다 적은 수의 잔류농약 항목만 검사하고 있어 부적합 농산물이 그대로 유통될 우려
- 식약처는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농약성분을 즉각 반영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 우려 및 검사기관의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의 승인방법 불합리

3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확인

-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잔류농약 기준 위반자에 대해 출하제한조치를 하고서도 출하제한기간 중 다시 납품받는 등 사후관리 소홀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잔류위반농가 양도 가축에 대한 정보 연계가 미흡하거나 양수신고 정보 제공 누락으로 규제검사에서 제외되어 유통되는 가축 식육의 안전성 저해 우려

1 농산물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 부적정

농관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제61조, 제68조 제3항 등에 따라 매년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성 조사는 조사목적, 대상 등에 따라 “생산단계 등 안전성 조사”, “잔류실태 조사”, “농업정책지원 조사”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 제3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잔류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대상 품목, 시료수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농업정책지원 조사”의 경우에는 농산물 수출지원, 친환경 인증관리 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조사대상 품목 및 시료수 등이 정해지고 있다.

따라서 농관원이 품목별 조사수량을 결정하는 “생산단계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때는 잔류실태 조사 등 다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부적합률이 낮은 품목보다는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위주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농관원에서 잔류실태 조사 등 다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생산단계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지 2016년 농산물 조사 실적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별표 7] “조사건수 500건 이상, 부적합률 2% 미만인 품목의 안전성 조사 현황” 및 [별표 8] “조사건수 100건 이상, 부적합률이 5% 이상인 품목의 안전성 조사 현황”과 같이 사과, 포도, 토마토 등 3개 품목은 잔류실태 및 농업정책 지원 조사 등에서 연간 최소 1,086건에서 최대 1,418건씩 조사하여도 부적합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품목인데도 생산단계 등 안전성 조사를 최소 235건에서 최대 387건씩 실시한 반면에 알타리무, 파세리, 샐러리 등 3개 품목은 잔류실태 및 농업정책지원 조사 등에서 연간 최소 161건에서 최대 379건씩 조사하여 부적합률이 1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도 생산단계 등 안전성 조사는 최소 23건에서 최대 68건에 그치고 있는 등 다른 조사 결과의 부적합률을 반영하여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위주로 생산단계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감사 시 감사기간 중 출하되어 안전성 조사가 가능한 품목 중 2016년 부적합률이 높은 9개³⁸⁾ 품목을 선정하여, 시료 75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본 결과 이 중 12건³⁹⁾에서 부적합이 발견되는 등 해당 품목의 안전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 의견 농관원은 앞으로 부적합률이 낮은 품목보다는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위주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는 데 동의하면서, 병해충 발생에 따른 농약 사용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8)배추, 부추, 상추, 샐러리, 시금치, 쑥갓, 알타리무, 쪽파, 파세리 등 9개 품목으로 2017. 11. 1.~2017. 11. 30. 생산지에서 출하가 예정되어 안전성 조사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

39)부추 2건, 시금치 2건, 쑥갓 1건, 알타리무 4건, 쪽파 1건, 파세리 2건 등

조치할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시 생산단계 등 안전성 조사는 잔류실태 조사 등 다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개선대책 미흡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수거·검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초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등 농산물 수거검사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잔류된 농산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검사에서 적발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별 시험·분석·연구기관의 검사 역량을 고려하여 특정 성분은 반드시 검사하도록 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시험장비 지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 시험·분석·연구기관의 검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⁴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잔류농약 검사기관의 분석능력을 점검한 결과, [표 31]과 [별표 9]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분석 장비 및 인력 현황”과 같이 보유 장비 및 인력 등의 차이로 같은 농약이

40) 지방식약청 소관 업무: HACCP 인증 및 평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사후관리, 위해정보에 따른 선행조사, 수입식품 영업 등록·관리, 수입식품검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지도 및 교육·홍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사후관리, 연간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사용된 시료라 하더라도 시료 채취 지역 및 검사 주체에 따라 부적합 판정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시·도별 잔류농약검사 가능 성분 개수

(단위: 개)

시·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분석항목개수	264	213	293	249	164	208	192	314	220
시·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분석항목개수	193	211	193	158	190	229	246	241	

주: 분석 시설이 두 개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부산, 인천, 대구, 울산, 충남, 경북)의 경우, 분석 항목 수가 많은 시설을 기준으로 함
 자료: 식약처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잔류농약 분석 장비 및 인력을 살펴보면, [별표 9]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분석 장비 및 인력 현황”과 같이 서울의 경우 총 24 명이 67개 장비로 잔류농약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세종의 경우 1명이 5개 장비를, 강원의 경우 1명이 6개 장비를, 충북의 경우 1명이 7개 장비를, 경남의 경우 1명이 8개 장비를, 제주의 경우 1명이 4개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석 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분석능력 차이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출이 불가능한 농약성분이 잔류된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어 이번 감사 시 지방식약청 및 농관원 지원⁴¹⁾을 통해 감사기간 중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중 부적합 검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11개 품목을 선정하여, 243개 시료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0] “농관원 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시료 중 부적합 내역”과 같이 23개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고 이 중 5개 농약성분⁴²⁾은 해당 시료가 수거된

41) 농관원 지원의 경우 최소 320개 성분, 지방 식약청의 경우 최소 370개 성분 이상 분석 가능

42) 디노테퓨란(Dinotefuran), 스피네토람(Spinetoram), 카보퓨란(Carbofuran),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한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위 검출 성분 중 디노테퓨란(Dinotefuran) 성분과 카보퓨란(Carbofuran) 성분의 경우⁴³⁾ ▲▲에서 2014년 이후 각각 593억 원, 334억 원어치의 농약을 공급하는 등 상당수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디노테퓨란 성분은 15개 지방자치단체⁴⁴⁾에서, 카보퓨란 성분은 4개 지방자치단체⁴⁵⁾에서 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성분에 대해 해당 성분을 반드시 검사하도록 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시험장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 초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통농산물별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2014년~2016년 9월)을 반영하여 계획을 작성하도록 적시만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출이 불가능한 농약성분이 잔류된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식약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검사항목 조정 등 검사체계 개선 및 첨단장비 지원, 잔류농약 교육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검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적합 농산물이 각 지방자치단체 검사에서 누

43) 디노테퓨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독성 살충제, 목화진딧물, 벼룩잎벌레 등의 방제에 쓰임
카보퓨란: 카바메이트계 살충제 농약, 콩, 옥수수, 벼멸구 등의 방제에 쓰임

44)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45)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락되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특정 성분은 반드시 검사하도록 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시험장비 지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 시험·분석·연구기관의 검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지정 부적정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별표 9] 및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초 수입되는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이하 “최초 정밀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동시다성분 분석법으로 한 번에 370개 농약성분에 대한 동시분석이 가능한데도, 식약처는 370개 성분을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검사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 부적합이력 또는 검출이력이 있는 농약성분에 한해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유로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최초 정밀검사는 다이아지논⁴⁶⁾ 등 58개 농약성분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2014년 12월 마련한 「수입식품 잔류농약 검사체계 개선방안」에서 “동시다성분 분석 대상 농약 중 부적합 이력 또는 검출이력 항목” 중심으로 정밀 검사 항목을 선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정밀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분이 수입농산물 검사과정

46) 다이아지논: 유기인제 살충제로서 접촉제 또는 음독제로 사용, 이화명충, 잎굴파리, 심식충 방제에 사용

에서 검출된 경우 해당 성분을 신속히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최초 정밀 검사 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7. 4. 17. 및 같은 해 6. 19. 수입바나나와 라임잎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검사 과정에서 위 58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분인 “피프로닐⁴⁷⁾”과 “루펜누론⁴⁸⁾”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위와 같이 최초 정밀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성분이 검출되었는데도, 감사원 감사 종료일인 2017. 12. 15.까지 위 2개 성분을 최초 정밀 검사 항목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어 피프로닐과 루펜누론 농약성분이 포함된 농산물이 최초 정밀검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수입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식약처는 정밀검사 실시 잔류농약성분 선정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대상 성분을 검토·관리하는 한편, 2017. 4. 17. 및 같은 해 6. 19. 검출된 피프로닐과 루펜누론에 대해서도 검사대상 성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농산물에서 검출된 피프로닐과 루펜누론을 정밀검사 항목에 추가할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한편, 앞으로 정밀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약 성분이 수입농산물 검사과정에서 검출된 경우 해당 성분을 신속히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7) 피프로닐: 바퀴벌레나 벼룩, 진드기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맹독성 살충제

48) 루펜누론: 벼룩제거에 쓰이는 살충제 농약

4 수입농산물 검사비용 승인방법 불합리

식약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험·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을 제출(재지정의 경우 변경된 사항에 한함)받아 이를 승인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수입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관(전체 4개 기관)의 검사수수료 승인액을 확인한 결과, [표 32]와 같이 4개 기관 모두 ‘농약다성분 220종’, ‘농약다성분 5종 이하’, ‘농약다성분 1종 추가’로 구분하여 검사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표 32] 수입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현황

검사구분	검사성분수	검사기관명	검사비용	최근수수료변경일시
농약다성분 분석	220종	▶▶연구원	915,375원	2009년 8월
		-	915,000원	
		-	914,981원	
		-	844,186원	
농약다성분 분석 (5종 이하)	5종 이하	▶▶연구원	100,131원	
		-	100,027원	
		-	100,131원	
		-	100,000원	
농약다성분 분석 (1종 추가)	1종 추가시마다	▶▶연구원	12,380원	
		-	12,000원	
		-	12,084원	
		-	12,380원	

자료: 식약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별표 9] 및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최초 정밀검사 시에는 잔류농약 58개 성분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개의 시료로 여러 개의 농약성분을 분석하는 농약다성분 분석방법은 [표 33]과 같이 2001년에는 1개의 시료로 최대 96종의 농약성분을 검사할 수 있었으나 2017년에는 1개의 시료로 370종의 농약성분까지 검사할 수 있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 농약다성분 분석법의 연도별 검사항목수 변화 추이

2001년	2003년	2010년	2014년	2017년
96종	196종	222종	282종	370종

자료: 식약처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수수료를 승인할 때에는 수입식품 최초 정밀 검사에 적용하는 위 58종 농약성분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농약다성분 분석방법이 발전하여 원가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승인한 시험검사 수수료가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수입식품 최초 정밀검사에 적용하는 58종 농약성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지 않고 있고, 농약다성분 분석방법이 위 시험·검사 수수료 승인시 220종에서 2017년 말 현재 370종으로 발전하였는데도 과거 승인한 시험·검사 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농산물 수입업자가 ▶▶연구원 등 4개 검사기관에 잔류농약 58종의 검

사를 의뢰할 경우 실제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5종 검사수수료”에 “1종당 추가 검사 수수료에 53(58종에서 5종을 차감)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되어, [표 34]와 같이 수입식품에 대한 최초 정밀검사는 농약다성분 분석 검사성분 수 220종의 26.4%에 해당하는 58종만 검사하면서 검사수수료는 220종 대비 80.4%에서 89.6%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 말 현재 농약다성분 분석방법이 370종으로 발전하였는데도 220종을 기준으로 책정된 농약다성분 분석 시험·검사 수수료를 그대로 두고 있다.

[표 34] 수입 농산물 잔류농약 58종의 검사수수료 현황

(단위: 원, %)

검사기관명	220종 검사수수료(A)	58종 검사 수수료(B)	대비 비율(B/A)
▶▶연구원	915,375	756,271	82.6
-	915,000	736,027	80.4
-	914,981	740,583	80.9
-	844,186	756,140	89.6

자료: 식약처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식약처는 앞으로 민간 검사기관에서 검사수수료 변경신청 등을 한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앞으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를 승인하면서 수입식품 최초 정밀검사에 적용하는 58종 농약 성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별도로 산정하고, 잔류농약 동시다성분 분석법의 기술발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수수료가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5 도매시장 농산물 출하제한자 지정 및 관리 부적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출하제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⁴⁹⁾ 동안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출하제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도매시장 법인 등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⁵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출하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도매시장 법인과 출하제한 기간에 출하한 자에게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출하제한자의 농산물이 출하제한 기간에 반입되지 않도록 출하제한 관련 업무 처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매시장 법인 등에 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⁵¹⁾,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4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3회 적발 시 6개월 동안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르면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는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게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51)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 조례」 및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97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 감독 권한을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위탁함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3개 도매시장⁵²⁾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해당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출하하였다가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23명의 출하자에 대해 출하제한기간 중 출하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출하제한기간 중 출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그 결과, [표 35] 및 [별표 11] “출하제한 미이행 내역”과 같이 위 부적합 판정자 223명 중 57명이 출하제한기간에 해당 도매시장 법인을 통해 계 71,528 kg의 농산물을 출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5] 농수산물 도매시장별 출하제한 미이행 내역

(단위: 명, kg)

도매시장명	농산물 안전성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2015. 1. 1.~2017. 11. 30.)	출하제한미이행내역		
		계	출하제한기간에 출하내역	
			출하자	출하량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98	43 ^{주)}	41	62,340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70	8	8	2,131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55	8	8	7,057
계	223	59	57	71,528

주: 1. ㄷ, ㄱ 등 2명은 출하제한기간에 출하내역이 없으나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 법인에 미통보함
자료: 지방자치단체별 제출자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자료 재구성

또한 출하제한 미이행자 57명 중 구리농수산물공사는 ㅎ 등 4명, 안산시는 ㄱ 등 2명 계 6명을 출하제한자로 지정하고도 해당 도매시장 법인 또는 출하자에게 위 내용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출하제한 관련 업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2) 전국에 총 33개 공영도매시장(중앙도매시장 11개, 지방도매시장 22개)을 운영 중이며 구리시, 수원시,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방도매시장에 해당함

그런데도 구리시, 수원시, 안산시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위 사실을 모른 채 해당 도매시장 법인 및 출하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 출하제한자와 출하제한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출하제한 관련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구리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자 전산등록 후 자동검색 팝업창(출하제한 내역 확인) 구축 등 출하제한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해당 도매시장 법인과 출하제한자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리시장, 수원시장, 안산시장은

[별표 11]의 출하제한 미이행자 57명과 출하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2조 및 제90조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과 도매시장 출하제한자가 출하제한기간에 출하하는 일이 없도록 출하제한자와 출하제한 내역을 자동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출하제한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6 잔류위반농가 양도 가축(소) 정보 연계 부적정

검역본부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⁵³⁾(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시스템으로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축산물안전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약처 고시, 이하 “검사요령”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검사 완료일부터 6개월 동안 출하하는 가축에 대하여 규제검사⁵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검사기관의 도축검사관은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을 통해 규제검사 대상인지 확인한 뒤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축장에서 출고를 보류하며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 식용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2015. 3. 2. 식약처 등에 잔류위반농가가 규제검사 기간 중 양도한 가축의 도축이 양수 농가 명의로 의뢰된 경우 해당 가축도 규제검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규제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검역본부의 관리시스템과 축평원의 쇠고기 이력시스템⁵⁵⁾(이하 “이력시스템”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잔류위반농가의 양도

53) 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축산물안전관리를 정보화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정보를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각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등 축산물위생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54) 잔류위반농가 출하 가축, 기립불능 가축,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잔류위반 식육을 폐기(소각, 매몰 등)함으로써 잔류위반 축산물의 유통방지가 주목적

55) 쇠고기의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가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⁵⁶⁾하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한 가축에 대하여 규제검사를 실시⁵⁷⁾하도록 검사요령을 개정(시행일: 2016. 1. 1.)하였고, 검역본부는 관리시스템과 축평원의 이력시스템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4월 두 차례의 협의(4. 2., 4. 10.)를 거쳐 연계주기, 전송항목, 전송방법 등 연계방안을 [표 36]과 같이 확정하였다.

[표 36] 관리시스템과 이력시스템 연계 방안

구분	추진 내용
연계방법	검역본부와 축평원 간기연계되어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이력시스템을 활용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관리시스템은검역본부내 동일망 서버로 정보공유 가능
전송내용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잔류위반농가의 정보(도축검사 불합격 개체이력번호, 농장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이력시스템에 전송하면 이력시스템은 잔류위반농가의 동거 가축 정보를 추출하여 관리시스템에 전송
연계주기	일 1회 전송

자료: 검역본부 및 축평원 자료 재구성

그리고 검역본부는 위 연계방안에 따라 관리시스템과 축평원의 이력시스템 간 자료 전송 테스트(2015. 7. 27.~12. 31.)를 진행한 뒤 2016. 1. 1.부터 관리시스템에서 시·도 검사기관이 규제검사 대상인 잔류위반농가의 동거 가축 확인에 활용하도록 운영 중이다.

이에 이번 감사 시 시·도 검사기관이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한 출하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한 가축(소) 중 도축장에서 도축된 426두(2016. 1. 1.~2017. 10. 31.) 중 52두(12%)만 규제검사를 하였을 뿐 나머지 374두(88%)는 규제검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56) 식육 중 잔류물질 위반농가 사후관리 부적정(시행일 2015. 3. 2.), 관계기관: 식약처, 농식품부

5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국내 출생 소 및 수입소, 종돈만 해당

그 원인을 점검해 본 결과 잔류위반농가의 양도 가축(소)에 대한 정보 미연계 및 양수신고 정보 누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잔류위반농가 양도 가축(소) 정보 미연계

위 감사원 통보 내용에 따르면 잔류위반농가가 규제검사 기간 중 양도한 가축도 규제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식약처도 검사요령을 개정하여 2016. 1. 1. 부터 같은 검사요령 제8조 제7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된 가축이 양수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될 때 규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검사요령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검역본부는 시·도 검사기관에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의 양도·양수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검역본부는 축평원에 잔류위반농가의 동거 가축 정보뿐만 아니라 양도 가축 정보도 요청하고 이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도 검사기관이 규제검사 대상인 양도 가축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검역본부는 2015년 4월 축평원과 정보 연계 협의 시 양도 가축 정보를 제외한 채 동거 가축 정보만 요청하였고 2016. 3월에서야 잔류위반농가의 양도 가축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검사요령 시행일(2016. 1. 1.)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6. 11. 1. 에서야 관리시스템에서 잔류위반농가의 양도 가축 정보가 조회되도록 연계를 완료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시 관리시스템에 양도 가축 정보가 연계되지 않은 기간 (2016. 1. 1.~10. 31.) 동안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한 가축의 규제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농장주 ㄷ(경상북도 문경시 소재)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기간 동안

양도한 뒤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 50두 중 49두가 규제검사에서 제외되는 등 [별표 12] “양도 가축(소) 정보 미연계 기간(2016. 1. 1. ~ 10. 31.) 규제검사 실시 현황”과 같이 34개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되어 도축된 가축 272두 중 26두(10%)만 규제검사를 하였을 뿐 나머지 246두(90%)는 규제검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잔류위반농가 양도 가축(소) 정보 제공 누락

축평원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축평원은 2016. 3. 29. 검역본부와 도축검사증명서 정보 활용 등을 위해 정보연계 방안을 협의하면서 검역본부로부터 기존에 제공받던 잔류위반농가의 동거 가축 정보에 추가로 양도 가축 정보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검역본부와 데이터 연계 및 검증(2016. 8. 1.~10. 24.)을 거쳐 2016. 11. 1.부터 관리시스템에서 잔류위반농가의 가축 양도신고 정보도 조회되도록 연계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력시스템의 양도 정보(소)는 축산물이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양도자 및 양수자가 각각 양도·양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연신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양도신고, 양수신고 중 하나의 신고 정보⁵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축평원은 잔류위반농가의 양도가축이 규제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역본부로부터 요청받은 양도된 개체(소)에 대한 양도 자료를 제공할 때 양도신고된 정보뿐만 아니라 양수신고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했다.

58) 양도 및 양수 중 하나만 신고된 경우 거래가 없었는데 신고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그런데도 축평원은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의 양도 가축(소) 정보 제공 시 양도신고 정보는 제공하였으나, 양수신고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시 관리시스템에 양수신고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 동안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한 가축(소)의 규제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2016. 11. 1.~2017. 10. 31.)한 결과, 농장주 ㅁ(충청남도 예산군 소재)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기간 동안 양도한 뒤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 38두 모두 규제검사에서 제외되는 등 [별표 13] “양수신고 정보 제공 누락 기간(2016. 11. 1.~2017. 10. 31.) 규제검사 실시 현황”과 같이 30개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되어 도축된 소 154두 중 26두(17%)만 규제검사를 하였고 양수신고 정보도 제공되었더라면 규제검사에서 누락되지 않았을 나머지 128두(83%)는 규제검사에서 제외되는 등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잔류위반농가의 양도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 의견 검역본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리시스템의 보완사항 등을 검토하여 규제대상 양도 가축(소)에 대한 잔류물질 규제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축평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 기간 중 기존의 양도신고 정보뿐만 아니라 양수신고 정보도 즉시 연계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 타 기관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시 필요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17. 11. 16.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잔류위반농가가 양도한 가축(소)의 양도신고 정보를 제공할 때 양수신고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시정완료)]

초점4 원산지 위반 단속이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요 점검대상]

① 원산지 위반 단속정보 활용 적정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식품부, 해수부, 시·도는 각각 농관원, 수품원, 시·군·구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과징금 부과, 위반 공표 등)는 적발횟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단속기관이 적발한 단속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각 시스템 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각 단속기관 간 위반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누락되지 않는지를 점검하였다.

② 원산지 단속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자료 활용 여부

원산지 단속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의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입쌀 공매정보 등을 농관원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점검대상 업무현황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원산지 위반 적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수품원은 2015년 10월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위 각 시스템에 농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적발 정보를 입력·활용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과 수품원은 2017년 6월 단속기관 간 ‘거짓표시’ 위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한편,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조사(이하 “원산지 조사”라 한다)를 위해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37] 원산지 표시 단속 관련 정보 활용 현황

자료구분		자료명	내용	요청시기
외부 기관 자료 (8개)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aT)	수입쌀 공매정보	공매일자, 공매처 수량 등	ID 부여받아수시 확인
		학교급식업체현황	납품일자, 품목, 수량, 업체명, 주소 등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연계 수시 확인
	-	수입농축산물통관정보	품목별 통관수량, 거래금액, 수입업자명 등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연계 수시 확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정보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이력 정보, 업체명 등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연계 수시 확인
	-	수입농산물검역정보	품목, 수입일자, 수입국가, 업체명, 수량 등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연계 수시 확인
		수입 쇠고기 이력정보	품목, 구입·판매일자, 수량, 유통 경로 등	ID 부여받아수시 확인
	-	식품 관련 허가신고 업체 정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업체 정보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연계 수시 확인
	-	시장 및 유통조사 가격 정보	농산물 및 가공품 등 가격정보	홈페이지 접속 수시 확인
내부자료		원산지단속 정보공동활용	지방자치단체와 원산지 단속현황 공유	수시 공동 활용

주: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은농관원 원산지조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업무망시스템을 말함
자료: 농관원 자료 재구성

문제점

[요약]

- 적발횟수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중되는데,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 간 위반자료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여 규제효과 저하
- 원산지 단속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자료 활용 미흡으로 단속 효율성 부족

1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 공유 및 활용 부적정

농식품부, 해수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각각 농관원, 수품원, 시·군·구(이하 “단속기관”이라 한다)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수거·조사,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공표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 등 단속기관은 원산지표시법 제7조에 따라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같은 법 제6조의2 및 제1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처분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해수부, 농관원, 수품원, 시·도, 시·군·구 등의 홈페이지에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위반품목의 명칭, 위반내용 등을 공표⁵⁹⁾하는 등 [표 38]과 같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

59) 소비자에게 위반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자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원산지 표시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

[표 38]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및 공표 등 처분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 9월		
		소계	거짓표시	미표시	기타	거짓표시	미표시	기타	거짓표시	미표시	기타	거짓표시	미표시	기타
농관원	적발건수	12,127	8,033	4,138	46	2,776	1,555	18	2,905	1,378	14	2,352	1,205	14
	공표건수	8,046	7,909	137	-	2,760	53	-	2,876	49	-	2,273	35	-
수품원	적발건수	2,090	459	1,624	7	160	609	0	152	591	2	147	424	5
	공표건수	481	390	91	-	128	24	-	137	47	-	125	20	-
시·군·구 (농축산물)	적발건수	1,895	305	1,338	252	56	387	82	157	572	72	92	379	98
	공표건수	316	201	115	-	38	23	-	91	60	-	72	32	-
시·군·구 (수산물)	적발건수	1,171	62	1,091	18	13	339	7	37	406	3	12	346	8
	공표건수	106	31	75	-	10	5	-	13	42	-	8	28	-
계	적발건수	17,283	8,859	8,191	323	3,005	2,890	107	3,251	2,947	91	2,603	2,354	125
	공표건수	8,949	8,531	418	-	2,936	105	-	3,117	198	-	2,478	115	0

자료: 농관원, 수품원, 시·도 및 시·군·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농관원 등 단속기관은 단속기관 상호 간 정보공유를 통한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표 39]와 같이 단속기관 간 업무시스템을 연계하고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이하 “공동활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표 39]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위반정보 공유 현황

구분	내용
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활용시스템 운영(시·군·구 등과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내용을 공유, 2011. 5. 30.) 내부업무망인 유통관리시스템을 수품원의 내부업무망인 원산지관리 업무포털시스템과 거짓표시 위반정보를 연계하여 활용 중
수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활용시스템 운영(시·군·구 등이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내용을 등록, 2015. 11. 1.) 내부업무망인 원산지관리 업무포털시스템을 농관원의 유통관리시스템과 거짓표시 위반정보를 연계하여 활용 중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관원과 수품원의 공동활용시스템에 각각 농축산물(모든 위반사항), 수산물(거짓표시) 원산지 위반정보 입력 및 활용

자료: 농관원 등 제출자료 재구성

원산지표시법 제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원

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미표시) 경우⁶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거짓표시 등이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⁶¹⁾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2]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액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횟수에 따라 처분 등이 이루어지므로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원산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 원산지 위반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산지 단속 관련 업무의 위임기관인 농식품부, 해수부, 시·도는 수임기관인 각 단속기관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타 단속기관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공표 등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사후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시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 누락 및 과징금 부과 누락 등의 사례⁶²⁾가 확인되는 등 각 단속기관 간에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가 제대로 공유 및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관원과 수품원 간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미표시 등) 미연계

60) 원산지 위반(미표시) 두 번째 적발 이후부터 적발 시마다 적발기관이 홈페이지 등에 공표

61) 법 시행 시점인 2015. 6. 4. 이후 위반행위가 최초로 적발된 날로부터 2년 경과 후 과징금을 부과하며,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행위 중 마지막 위반행위 적발기관이 부과

62) 원산지 위반(미표시) 공표 누락 49건(농관원 8건, 수품원 13건, 지방자치단체 28건) 및 과징금 부과 누락 3건

이번 감사 시 2013년 이후 농관원과 수품원의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가 적절히 연계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관원의 내부업무망인 유통관리시스템과 수품원의 내부업무망인 원산지관리 업무포털시스템은 원산지 거짓표시 사항만 연계되어 있을 뿐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 사항은 연계되지 않아 관련 위반정보는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표 40], [표 41]과 같이 2013. 1. 1.부터 2017. 9. 30.까지 기간 동안 농관원과 수품원이 원산지 위반정보를 상호 공유하였다면 누락되지 않았을 ▼▼(대표자 ㄷ) 등 11개 영업소의 원산지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 누락 명세

연번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조사 주체	조사일자	위반품목	처분내용
1	▼▼	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품원	2013. 1. 8.	조미취치포	표시의 이행
				농관원	2015. 2.10.	배추김치	
2	-	-	경기도 고양시	수품원	2015.10.29.	활바지락등 5개 품목	표시의 이행
				농관원	2016. 1.19.	쌀(일반), 배추김치	
3	-	-	전라남도 여수시	수품원	2014.10.20.	조미오징어	표시의 이행
				농관원	2016.10.27.	동고건표고	
4	-	-	경상북도 경산시	수품원	2015. 4. 8.	멸치 등 3개 품목	표시의 이행
				농관원	2017. 1.20.	배추김치	
5	-	-	전라남도 강진군	수품원	2013. 1.29.	조미오징어	표시의 이행
				농관원	2017. 2. 7.	체리(일반)	
6	-	-	광주광역시서구	수품원	2013. 7.11.	새우젓	표시의 이행
				농관원	2017. 2.20.	절임식품	

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미표시)을 수품원에서 1차 적발 후 농관원에서 2차 적발
 자료: 농관원 및 수품원 제출자료 재구성

[표 41] 수품원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 누락 명세

연번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조사주체	조사일자	위반품목	처분내용
1	-	-	경상남도 양산시	농관원	2014. 2.12.	피땅콩	표시의 이행
				수품원	2015. 1.28.	마른 명태	표시의 이행
2	-	-	부산광역시 중구	농관원	2013. 6. 25.	배추김치	표시의 이행
				수품원	2016. 1. 21.	활가재 등 4개 품목	표시의 이행
3	-	-	경기도 화성시	농관원	2012. 6. 8.	쇠고기	표시의 이행
				수품원	2016. 10.12.	멸치	표시의 이행
4	-	-	충청남도 공주시	농관원	2017. 3. 3.	닭고기	표시의 이행
				수품원	2017. 3. 6.	낙지 등 2개 품목	표시의 이행
5	-	-	경상남도김해시	농관원	2015. 1. 30.	닭고기	표시의 이행
				수품원	2017. 9. 28.	활돔(참돔)	표시의 이행

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미표시) 을 농관원에서 1차 적발 후 수품원에서 2차 적발
 자료: 수품원 및 농관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수품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원산지 위반(미표시 등) 정보 미연계

이번 감사 시 2013년 이후 수품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가 적절히 연계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품원의 내부업무망인 원산지관리 업무포털시스템과 수품원이 시·군·구와 정보공유를 위해 운영하는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수산물)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시·군·구는 수품원이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공동활용시스템은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항만 입력할 수 있을 뿐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사항은 등록할 수 없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수품원도 시·군·구의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별표 14] “수품원 및 시·군·구 원산지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 누락 명세”와 같이 2013. 1. 1.부터 2017. 9. 30.까지 기간 동안 수품원과 시·군·구가 원산지 위반정보를 상호 공유하였더라면 수품원 및 시·군·구에서 원산지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가 누락되지 않았을 ◀◀(대표자 ㄷ) 등 27개 영업소(수품원 8개, 시·군·구 19개)의 위반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군·구의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원산지 위반정보 미공유·미활용

이번 감사 시 각 시·군·구가 관할구역 내에서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농축산물)에 제대로 등록하는지 점검해 본 결과, [별표 15]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 및 공동활용시스템 등록 현황(농축산물)”과 같이 최근 3년(2015. 1. 1.~2017. 9. 30.)간 위반 사항 1,895건 중 1,340건을 등록하지 않아 위반 사항 평균 미등록률(시·도 기준)이 70.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적발 시 앞선 시·군·구의 적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어 [표 42]와 같이 **◆◆**(대표자 ㄱㄱ) 등 2개 영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를 누락하였고, **♠♠**(대표자 ㄱㄴ) 등 2개 영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대상⁶³⁾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표 42]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 누락 및 과징금 부과대상 미인지 명세

연번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조사 주체	조사일자	위반품목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1	◆◆	ㄱㄱ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2016.11.14.	돼지목살	미표시	표시의 이행	농관원 공표 누락
				농관원	2017. 1. 5.	돼지고기	미표시	표시의 이행	
2	-	-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2016. 4.20.	단호박 등	미표시	과태료 부과	농관원 공표 누락
				농관원	2017. 3.27.	땅콩, 피호두	미표시	표시의 이행	
3	♠♠	ㄱㄴ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북구	2016. 5. 3.	한우	거짓표시	고발	농관원 과징금 부과대상 미인지
				농관원	2016. 5.10.	쇠고기	거짓표시	표시의 변경	
4	-	-	경기도 부천시	부천소사 경찰서	2016. 3.30.	소고기	거짓표시	표시의 변경	농관원 과징금 부과대상 미인지
				농관원	2016. 9.22.	삼겹살, 목삼겹	거짓표시	표시의 변경	

자료: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제출자료 및 농관원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입력자료 재구성

63) 타 단속기관에서 거짓표시 추가 적발이 없는 경우 최초 적발일로부터 2년 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과징금 부과

또한 시·군·구 등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시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하여 농관원의 원산지 위반 적발 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공동활용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별표 16] “공동활용시스템 미활용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공표 누락 및 과징금 미부과 명세”와 같이 ♣♣(대표자 ㄱㄷ) 등 9개 영업소의 원산지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를 누락하였고, ♥♥(대표자 ㄱㄹ)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 의견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원산지 표시 관리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위반정보 공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 등 7개 시·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단속 부서와 담당자가 달라 일원화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위반정보 공유를 철저히 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 공유 및 활용을 통해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미표시 등 원산지 위반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 공유 및 활용을 통해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미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단속 공동활용시스템에 원산지 미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위반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서울특별시 등 7개 시·도지사⁶⁴⁾는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시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관할구역 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 다른 단속기관의 위반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원산지 단속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자료 활용 미흡

원산지표시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입쌀 공매정보를 매년 단속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비축물량 판매·출고 현황자료에는 수입쌀뿐만

64)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아니라 콩, 참깨, 마늘 등 다른 수입농산물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농관원은 농산물 원산지 단속 계획을 수립할 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쌀 공매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 판매·출고 현황자료도 함께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농산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도 농관원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비축창고 판매·출고 현황 자료 중 수입쌀 관련 자료만 활용하고 그 외 농산물 품목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단속 계획 수립 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 시 2017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5일까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비축창고 판매·출고 현황 자료 중 콩, 참깨, 마늘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낙찰받은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사례와 같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낙찰받은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별표 17]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업체 내역”과 같이 총 11건(원산지 미표시 6건, 거짓표시 5건)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농산물 유통정보를 원산지 단속 계획 및 실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 강원 춘천 소재 ★★(대표자 ㄱㅇ)의 경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낙찰받은 미국산 콩으로 제조한 두부 9,200 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
- 전남 강진 소재 ◎◎(대표자 ㄱㅂ)의 경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낙찰받은 중국산 마늘 2,400 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

관계기관 의견 농관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 농산물 공매 낙찰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농산물 비축물량 판매·출고 현황자료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제4절 위기대응 분야

초점5 위해정보를 사전에 수집·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주요 점검대상]

① 축산물 위해정보 공유 및 대응조치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 등에 따르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공유하여 긴급대응하도록 하고,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식약처는 긴급 정보 입수 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위기경보 발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간 농축산물 위해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집·공유하여 위기대응매뉴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점검대상 업무현황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및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식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농축산물 위해정보를 수집하여 위기발생수준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①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처분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② 12개 부처 159종의 식품안전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공동 활용하는 ‘식품정보활용시스템’, ③ 공공정보를 국민(식품업체)에게 맞춤 제공하는 ‘식품

안전정보포털'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하여 공유·활용함으로써 식품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문제점

[요약]

- 농관원이 식용란 살충제 성분 검출 정보를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SafeQ)에 등록하였으나 식약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스템 미작동

1 축산물 위해정보 공유 및 대응조치 미흡

식약처는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 및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식약처, 2017)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식품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와 제26조, 「식품안전관리지침」 및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은 상호 협력하에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등 식품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공유하며, 식약처가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상황을 전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유통 축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이슈가 제기되고 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위기 수준이 ‘주의(Yellow)’⁶⁵⁾ 단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해정보 분석 및 상황점검회의 등 긴급대응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잠정 유통·판매 금지, 수거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식약처는 2016년 하반기부터 언론보도⁶⁶⁾를 통해 알려진 산란계 농가의 살충제 사용에 대한 탐색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2017년 4월 초순경에는 ■■으로부터 유통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농약성분 검출 제보를 받은 뒤 유통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등, 언론이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유통 중인 계란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식약처는 관계 행정기관⁶⁷⁾이 유통 중인 계란에서 잔류농약을 검출한 사실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공유한 경우 실시간으로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여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에 이번 감사 시 관계 행정기관 간 식품 위해정보 공유를 통한 긴급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한 결과, 농관원(◆◆팀)이 2017. 4. 25.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친

65)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66) 2016. 8. 17. CBS 노컷뉴스 “닭 진드기, 살충제 살포...정부, 계란 위해성 알면서도 방치”, 2016. 8. 18. CBS 노컷뉴스 “살충제 닭 계란 불안 증폭...정부, 샘플조사 감추기 급급”, 2016. 10. 연합뉴스, 2016. 12. 12. 소비자TV “닭에 직접 농약을? 계란 잔류농약 위험” 등

6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축장·집유장·농장 등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는 농식품부에 위탁

환경 계란 유통과정 특별조사⁶⁸⁾ 실시 과정에서, 친환경 농가인 충남 홍성군 소재 △△농장(대표 ㄱ사)에서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를 초과⁶⁹⁾하여 검출⁷⁰⁾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5. 19.경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SafeQ)⁷¹⁾ 시스템에 위 검출내역을 입력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관계기관 간에 공유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등재된 위해 정보를 담당자 등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없어 담당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여 못하여 2017년 8월 농식품부가 산란계 농가에 대한 잔류농약 전수조사⁷²⁾를 실시할 때까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식약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공유한 것만으로는 유해물질 검출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⁷³⁾ 농관원이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SafeQ) 시스템에 친환경 계란에서 살충제 농약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한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소관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SMS 문자 발송 등 기능을 개선하는 등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8) 2016년 6월부터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살충제 계란 문제로 인해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되어 인증 기준 위반 농가 처분 및 부적합품 시장유통 차단을 위해 실시

69)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 농가 등 3건은 기준치 이내의 비펜트린 검출(친환경 인증 농가는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위 3건에 대하여는 인증표시 제거 등 조치 실시)

70) 수거일: 2017. 5. 10., 수거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부적합판정 및 통보일: 2017. 5. 19.

71) 농축산물에 함유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정결과 공유 시스템(농관원, 2006년 이후)

7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축장·집유장·농장 등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는 농식품부에 위탁

73)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는 사전에 관심정보를 등록하여 해당 유해물질 검출 시 알려주는 기능이 없고, 업무담당자가 검사품목, 검사결과를 일일이 조회하여야만 파악 가능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이 수집한 농축산물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검출 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유해물질 검출정보 공유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초점6 위기 발생 시 매뉴얼 등에 따른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요 점검대상]

① 식용란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부적정

식약처는 농축산물에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이 발견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등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⁷⁴⁾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마련하여 축산물에 대한 안전 검사 시 필요 검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검사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하여 피프로닐 등 살충제에 대한 계란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점검대상 업무현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정할 때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기준 및 주요 외국기준 등을 참고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의약품 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시험법을 마련할 때에는 필요시 전문가의 검토와 식약처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식약처는 2016. 12. 30. 검역본부로부터 피프로닐 등 닭고기 및 식용란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설정에

74) 시험분석을 하기 위하여 상세히 기술한 일련의 시험과정(「식품·의약품 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대한 요청을 받은 후 2017. 4. 20. 이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확립하였고, 같은 해 9. 28.에는 당초 기준에는 빠져있던 피프로닐 대사산물⁷⁵⁾을 추가하여 시험법을 확립하였다.

문제점

[요약]

- 식약처는 2017년 4월 피프로닐에 대한 “신속대응 시험법”을 마련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기준과 달리 피프로닐 설폰을 누락하고 기준 마련
 - 특히, “신속 대응 시험법 마련”은 식약처장 결재사항인데도 검토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절한 내부검토 절차 미준수

1 식용란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부적정

식약처는 축산물에서 국내 잔류허용기준이나 시험법이 없는 물질이 발견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지정하고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국내 잔류허용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정할 때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과 주요 외국 기준 등을 검토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식용란의 피프로닐⁷⁶⁾ 잔류허용기준(0.02mg/kg) 규제대상 물

75) 대사반응에 있어 반응물, 중간산물 또는 생성물을 말함

76) 바퀴벌레나 벼룩, 진드기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맹독성 살충제

질이 ‘피프로닐과 피프로닐 설펜(sulfone)⁷⁷⁾의 합’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미국도 ‘피프로닐 설펜’을 잔류허용기준 규제물질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 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4조 등에 따르면 시험법을 마련할 때에는 시험법 확립부서(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가 시험법안⁷⁸⁾ 작성부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시험법안 마련을 요청하고 시험법안 작성부서가 시험법안을 마련하여 시험법안 확립부서에 통보하면 시험법안 확립부서는 필요시 전문가의 검토와 식약처장의 결재를 받아 시험법안을 최종 확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피프로닐의 식용란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정하는 경우, 피프로닐 설펜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전문가 검토 등 내부 절차를 준수하여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2016년 11월 유럽(네덜란드) 가금류 농장에서 피프로닐을 사용한다는 최초 언론보도 이후 2016년 12월 검역본부로부터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설정 요청을 받고 2017년 4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을 준용하여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피프로닐에 대한 잔류물질 정의 및 유럽연합과 미국과는 달리,⁷⁹⁾ 피프로닐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본과 국내 농산물 기

77) 피프로닐 대사산물(metabolite)의 일종, MB46136

78) 시험법 확립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각 부서가 작성한 시험법 확립 이전의 초안(「식품·의약품 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79) 유럽연합은 0.005mg/kg(피프로닐과 피프로닐 설펜의 합), 미국은 0.03mg/kg(피프로닐, 피프로닐 설펜, 설펜 이드, 디설펜), 일본은 0.02mg/kg(피프로닐)

준에 따라 피프로닐 설폰은 제외한 채 피프로닐만을 대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식약처(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는 시험법안 작성부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로부터 통보받은 시험법안을 확립하면서 전문가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식약처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7년 8월 산란계 농가 1,23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식약처가 마련한 잔류허용기준(0.02mg/kg)에 따라 피프로닐 원물질만을 검사항목으로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였다.

그리고 식약처는 2017. 8. 21. 살충제 계란에 대한 위해평가 발표 이후 학계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같은 해 9. 28.부터 피프로닐 설폰을 포함하는 것으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변경하여 같은 해 10. 10. 이후부터는 피프로닐 설폰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별표 18] “2017년 10월 이후 피프로닐 설폰 부적합 판정 내역”과 같이 2017. 10. 10.부터 감사종료일인 같은 해 12. 15. 현재까지 20개 농장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농식품부의 2017년 8월 전수조사 이후에도 피프로닐 설폰이 포함된 계란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기관 의견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경우는 잔류허용기준만 설정하고 있을 뿐 시험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일본과 국내 농산물 기준을 참고하였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 생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피프로닐 검사만으로도 계란 안전관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서 규제대상에 피프로닐 대사산물을 포함하고 있고,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약처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잔류물질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 의약품, 농약 등으로 원 물질과 대사물질”로 정의하고 있어 대사물질이 발생할 개연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일본의 사례만 참고하여 전문가 검토와 국제기준 등 추가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앞으로 국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확립하는 경우 국제기준과 주요 외국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검토 등 내부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목차

[별표 1]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서 출하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결과 인증기준 초과 내역	98
[별표 2] 사육밀도 기준 위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 현황	101
[별표 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조사·평가 현황	103
[별표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조사·평가 현황	104
[별표 5] 품목 등록이 제한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내역.....	105
[별표 6] 허위 처방 의심사례 명단	107
[별표 7] 조사건수 500건 이상, 부적합률이 2% 미만인 품목의 안전성 조사 현황	109
[별표 8] 조사건수 100건 이상, 부적합률이 5% 이상인 품목의 안전성 조사 현황	110
[별표 9]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분석 장비 및 인력 현황	111
[별표 10] 농관원 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시료 중 부적합내역	115
[별표 11] 출하제한 미이행 내역	116
[별표 12] 양도 가축(소) 정보 미연계 기간(2016.1.1.~10.31.)의 규제검사 실시 현황 ..	119
[별표 13] 양수신고 정보 제공누락기간(2016.11.1.~2017.10.31.)의 규제검사 실시 현황 ...	120
[별표 14] 수품원 및 시·군·구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 누락 명세 ...	121
[별표 15]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 및 공동활용시스템 등록 현황(농축산물)	124
[별표 16] 공동활용시스템 미활용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공표 누락 및 과징금 미부과 명세.....	125
[별표 17]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업체 내역	126
[별표 18] 2017년 10월 이후 피프로닐 설폰 부적합 판정 내역	127

[별표 1]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서 출하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결과 인증기준 초과 내역

(단위: mg/kg)

연번	농가명	인증번호	축종 및 조직	검출(위반)물질	검출량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잔류허용기준	기준 대비 검출 비율	시료채취 일자
1	□	-	돼지(신장)	페니실린	0.02	0.005	4.00	2015. 6. 10.
2	-	-	소(신장)	페니실린	0.05	0.005	10.00	2015. 7. 21.
3	-	-	돼지(신장)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0.3	0.03	10.00	2015. 8. 18.
4	-	-	돼지(신장)	암피실린	0.04	0.005	8.00	2015. 8. 31.
5	-	-	돼지(신장)	설파제15종	0.1	0.01	10.00	2015. 9. 3.
6	-	-	돼지(근육)	마보플록사신	0.06	0.015	4.00	2015. 9. 9.
7	-	-	돼지(근육)	페니실린	0.01	0.005	2.00	2015. 11. 4.
8	-	-	돼지(신장)	페니실린	0.23	0.005	46.00	2016. 1. 4.
9	-	-	돼지(신장)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0.1	0.03	3.33	2016. 1. 7.
10	-	-	돼지(신장)	페니실린	0.04	0.005	8.00	2016. 1. 12.
11	-	-	돼지(근육)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그룹)	0.025	0.02	1.30	2016. 1. 18.
12	-	-	소(신장)	암피실린	0.02	0.005	4.00	2016. 2. 25.
13	-	-	돼지(근육)	설파디아진	0.012	0.01	1.20	2016. 3. 3.
14	-	-	돼지(신장)	페니실린	0.01	0.005	2.00	2016. 3. 4.
15	-	-	소(신장)	페니실린	1.21	0.005	242.00	2016. 3. 8.
16	-	-	소(신장)	페니실린	0.03	0.005	6.00	2016. 3. 9.
17	-	-	소(신장)	페니실린	0.01	0.005	2.00	2016. 3. 15.
18	-	-	소(신장)	디하이드로스เตรptomycin스트렙토마이신	1.4	0.1	14.00	2016. 3. 23.
19	-	-	닭(근육)	엔로플록사신	0.013	0.01	1.30	2016. 4. 2.

연번	농가명	인증번호	축종 및 조직	검출(위반)물질	검출량	유기무항생 제 축산물 신류허용기준	기준 대비 검출비율	시료채취 일자
20	-	-	소(신장)	페니실린	0.08	0.005	16.00	2016. 4. 7.
21	-	-	소(신장)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 마이신	9.5	0.1	95.00	2016. 4. 20.
22	-	-	돼지(신장)	엔로플록사신	0.032	0.03	1.10	2016. 4. 27.
23	-	-	돼지(신장)	옥시테트라사이클린/클로르테트라싸 이클린/테트라사이클린	0.3	0.12	2.50	2016. 5. 6.
24	-	-	닭(근육)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 마이신	0.2	0.02	10.00	2016. 5. 20.
25	-	-	소(신장)	엔로플록사신	0.03	0.02	1.50	2016. 5. 25.
26	-	-	돼지(신장)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0.1	0.03	3.33	2016. 5. 26.
27	-	-	돼지(신장)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0.1	0.03	3.33	2016. 6. 9.
28	-	-	소(신장)	페니실린	0.05	0.005	10.00	2016. 6. 30.
29	-	-	돼지(신장)	설파제15종	0.1	0.01	10.00	2016. 8. 11.
30	-	-	돼지(신장)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 마이신	0.6	0.1	6.00	2016. 8. 19.
31	-	-	소(신장)	세팔렉신	10.40	0.1	104.00	2016. 8. 25.
32	-	-	소(신장)	설파제15종	2.6	0.01	260.00	2016. 10. 20.
33	-	-	돼지(신장)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 마이신	0.2	0.1	2.00	2016. 11. 11.
34	-	-	돼지(신장)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0.3	0.03	10.00	2016. 12. 27.
35	-	-	돼지(신장)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0.3	0.03	10.00	2017. 1. 9.
36	-	-	돼지(신장)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 마이신	0.2	0.1	2.00	2017. 1. 24.
37	-	-	돼지(신장)	틸미코신	0.5	0.1	5.00	2017. 2. 1.
38	-	-	돼지(신장)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0.1	0.03	3.33	2017. 3. 21.
39	-	-	돼지(신장)	마보플록사신	0.04	0.015	2.67	2017. 3. 21.

연번	농가명	인증번호	축종 및 조직	검출(위반)물질	검출량	유기무항생 제 축산물 신류허용기준	기준 대비 검출비율	시료채취 일자
40	-	-	돼지(신장)	페니실린	0.04	0.005	8.00	2017. 4. 19.
41	-	-	돼지(신장)	벤질페니실린/프로케인페니실린	2.37	0.005	474.00	2017. 4. 25.
42	-	-	돼지(신장)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0.1	0.03	3.33	2017. 5. 10.
43	-	-	돼지(신장)	벤질페니실린/프로케인페니실린	0.02	0.005	4.00	2017. 5. 15.
44	-	-	돼지(신장)	마보플록사신	4.49	0.015	299.33	2017. 5. 24.
45	-	-	돼지(신장)	옥시테트라사이클린/클로르테트라싸 이클린/테트라사이클린	0.4	0.12	3.33	2017. 6. 2.
46	-	-	돼지(신장)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 마이신	0.2	0.1	2.00	2017. 6. 9.
47	-	-	소(신장)	옥시테트라사이클린/클로르테트라싸 이클린/테트라사이클린	4.3	0.12	35.80	2017. 7. 11.
48	-	-	소(신장)	옥시테트라사이클린/클로르테트라싸 이클린/테트라사이클린	3.0	0.12	25.00	2017. 7. 12.
49	-	-	돼지(신장)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 마이신	0.8	0.1	8.00	2017. 7. 17.
50	-	-	닭(지방)	비펜쓰린	0.78	0.001	780.00	2017. 9. 27.
51	-	-	돼지(신장)	페니실린	0.26	0.005	52.00	2017. 10. 24.
52	-	-	돼지(신장)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0.1	0.03	3.33	2017. 10. 30.
53	-	-	돼지(신장)	벤질페니실린/프로케인페니실린	0.01	0.005	2.00	2017. 11. 6.

자료: 검역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사육밀도 기준 위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 현황

연번	시군구	농장명 (농장주)	인증번호	인증일자 (갱신일자)	인증 유효기간	위반 확인일자 (살처분일자)
1	세종특별 자치시	♡♡농장 (B)	-	2016. 4. 29. (2017. 4. 29.)	2016. 4. 29.~ 2018. 4. 28.	2016. 11. 27.
2	세종특별 자치시	-	-	2016. 11. 27. (2017. 11. 27.)	2016. 11. 27.~ 2018. 11. 26.	2016. 12. 13.
3	세종특별 자치시	-	-	2016. 11. 27. (2017. 11. 27.)	2016. 11. 27.~ 2018. 11. 26.	2016. 12. 18.
4	세종특별 자치시	-	-	2016. 1. 11. (2017. 1. 11.)	2016. 1. 11.~ 2018. 1. 10.	2016. 12. 13.
5	세종특별 자치시	-	-	2016. 10. 11. (2017. 10. 11.)	2016. 10. 11.~ 2018. 10. 10.	2016. 12. 15.
6	세종특별 자치시	-	-	2016. 11. 9. (2017. 11. 9.)	2016. 11. 9.~ 2018. 11. 8.	2016. 12. 18.
7	세종특별 자치시	-	-	2016. 10. 13. (2017. 11. 2.)	2016. 10. 13.~ 2018. 10. 12.	2016. 12. 17.
8	세종특별 자치시	-	-	2015. 12. 27. (2016. 12. 27.)	2015. 12. 27.~ 2017. 12. 26.	2016. 12. 16.
9	세종특별 자치시	-	-	2016. 1. 19. (2017. 1. 19.)	2016. 1. 19.~ 2018. 1. 18.	2016. 12. 20.
세종특별자치시계		9개 농장				
10	진천군	-	-	2016. 2. 5. (2017. 2. 5.)	2016. 2. 5.~ 2018. 2. 4.	2016. 12. 9.
충청북도 계		1개 농장				
11	아산시	-	-	2016. 5. 2. (2017. 5. 2.)	2016. 5. 2.~ 2018. 5. 1.	2016. 12. 2.
충청남도 계		1개 농장				
12	김제시	-	-	2016. 9. 17. (2017. 9. 17.)	2016. 9. 17.~ 2018. 9. 16.	2017. 2. 6.
전라북도 계		1개 농장				
13	평택시	-	-	2016. 2. 26. (2017. 2. 26.)	2016. 2. 26.~ 2018. 2. 25.	2016. 12. 18.
14	평택시	-	-	2016. 8. 8. (2017. 8. 8.)	2016. 8. 8.~ 2018. 8. 7.	2016. 12. 5.

연번	시군구	농장명 (동장주)	인증번호	인증일자 (갱신일자)	인증 유효기간	위반 확인일자 (실처분일자)
15	평택시	-	-	2016. 6. 27. (2017. 11. 3. 신규)	2016. 6. 27.~ 2017. 6. 26. (2017. 11. 3.~ 2018. 11. 2.)	2016. 12. 29.
16	화성시	-	-	2016. 1. 20. (2017. 1. 20.)	2016. 1. 20.~ 2018. 1. 19.	2016. 12. 9.
17	화성시	♣♣농장 (스)	-	2015. 12. 22. (2016. 12. 22.)	2015. 12. 22.~ 2017. 12. 21.	2017. 1. 1.
18	안성시	-	-	2016. 10. 23. (2017. 10. 23.)	2016. 10. 23.~ 2018. 10. 22.	2016. 12. 18.
19	안성시	-	-	2016. 7. 28. (2017. 7. 28.)	2016. 7. 28.~ 2018. 7. 27.	2016. 12. 24.
20	안성시	-	-	2016. 4. 15. (2017. 6. 20. 신규)	2016. 4. 15.~ 2017. 4. 14. (2017. 6. 20.~ 2018. 6. 19.)	2017. 1. 1.
21	여주시	-	-	2016. 9. 18. (2017. 9. 18.)	2016. 9. 18.~ 2018. 9. 17.	2016. 12. 8.
22	포천시	-	-	2016. 11. 3. (2017. 11. 3.)	2016. 11. 3.~ 2018. 11. 2.	2016. 11. 23.
23	포천시	-	-	2016. 3. 18. (2017. 3. 18.)	2016. 3. 18.~ 2018. 3. 17.	2016. 12. 6.
24	포천시	-	-	2015. 12. 24. (2016. 12. 24.)	2015. 12. 24.~ 2017. 12. 23.	2016. 12. 6.
25	포천시	-	-	2016. 2. 26. (2017. 2. 26.)	2016. 2. 26.~ 2018. 2. 25.	2016. 12. 15.
26	포천시	-	-	2016. 12. 23. (2017. 11. 15. 심사 중)	2016. 12. 23.~ 2017. 12. 22.	2017. 1. 25.
27	포천시	-	-	2015. 12. 24. (2016. 12. 24.)	2015. 12. 24.~ 2017. 12. 23.	2016. 11. 26.
28	포천시	♣♣농장 (오)	-	2016. 2. 24.	2016. 2. 24.~ 2017. 2. 23. (기간만료)	2016. 12. 17.
29	이천시	-	-	2016. 9. 18. (2017. 9. 18.)	2016. 9. 18.~ 2018. 9. 17.	2016. 12. 13.
경기도 계		17개 농장				
총계		29개 농장				

주: 2017. 12. 29. 기준

자료: 농관원 자료 재구성

[별표 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조사·평가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14년	2015년	합계	2016년	2017년 6월	합계
조사평가 방식	정기 조사평가	정기 조사평가	정기 조사평가	불시 수시 조사평가	불시 수시 조사평가	불시 수시 조사평가
조사평가업소수	158	181	339	224	85	309
적합업소수	145	171	316	186	62	248
부적합업소수	13	10	23	38	23	61
부적합비율 ^{주)}	8.2	5.5	6.8	17	27.1	19.7

주: 부적합 비율은 조사·평가 업소수 대비 부적합 업소 수를 백분율로 환산

자료: 식약처 자료 재구성

[별표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조사·평가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16년	2017년 6월	합계
조사·평가 방식	정기 조사·평가	정기 조사·평가	정기 조사·평가
조사·평가업소 수	81	59	140
적합 업소 수	75	56	131
부적합 업소 수	6	3	9
부적합비율 ¹⁾	7.4	5.1	6.4

주: 1. 부적합 비율은 조사·평가 업소 수 대비 부적합 업소 수를 백분율로 환산

2. 농장, 사료, 도축업, 집유업은 농식품부 위탁에 따른 제외

자료: 식약처 자료 재구성

[별표 5]

품목 등록이 제한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내역

번호 ^{주)}	농약성분명	성분한글명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
22	Dichlofluanid	디클로플루아니드	o
35	Methomyl	메토밀	o
39	Methamidophos	메타미도포스	o
62	Vinclozolin	빈클로졸린	o
90	Endosulfan	엔도설판	o
106	EPN	이피엔	o
138	Tolylfluanid	톨릴플루아니드	o
140	Tralomethrin	트랄로메트린	o
153	Parathion	파라티온	o
10	Dodine	도딘	x
12	DDT	디디티	x
15	Disulfoton	디설포톤	x
19	Dicofol	디코폴	x
47	Monocrotophos	모노크로토포스	x
48	Vamidotion	바미도티온	x
58	BHC	비에치시	x
77	Aldicarb	알디카브	x
91	Endrin	엔드린	x
93	Omethoate	오메토에이트	x
103	Isofenphos	아이소펜포스	x
108	Thiometon	티오메톤	x
113	Carbophenothion	카보페노티온	x
117	Captafol	캡타폴	x
120	Quintozene	퀸토젠	x
124	Chlorobenzilate	클로로벤질레이트	x
126	Chlordane	클로르단	x
129	Chlorfenvinphos	클로르펜빈포스	x
143	Triazophos	트리아조포스	x
145	Trichlorfon	트리클로르폰	x

번호	농약성분명	성분한글명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
154	Paraquat	패러콧	x
155	Parathion-Methyl	파라티온메틸	x
175	Phosalone	포사론	x
202	Heptachlor	헵타클로르	x
240	Fenoxycarb	페녹시카브	x
260	Halfenprox	할펜프록스	x
262	Hexaflumuron	헥사플루무론	x
274	Benzoximate	벤족시메이트	x
280	Cinosulfuron	시노설풀론	x
289	Isazofos	이사조포스	x
298	Thiazopyr	티아조피르	x
312	Pyrazoxyfen	피라족시펜	x
313	Pyroquilon	피로퀼론	x
322	Dimepiperate	디메피퍼레이트	x
350	Maneb	마네브	x
359	Zneb	지네브	x
362	Triazamate	트리아자메이트	x
369	Propisochlor	프로피소클로르	x
398	Quinalphos	퀴날포스	x
414	Quimmerac	퀸메락	x
420	Lindane	린단	x
계	50종		9종

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나와 있는 농약성분에 대한 번호
자료: 식약처와 농진청 자료 재구성

[별표 6]

허위 처방 의심사례 명단

(단위: 회)

연번	면허번호	수의사명	10분 이내 타사·도 처방 횟수	대표사례
1	-	-	126	2017. 1. 4. 08:17 경기도 화성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3분 뒤인 08:20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농가에 처방
2	-	-	136	2017. 1. 2. 11:35 경기도 이천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6분 뒤인 11:41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농가에 처방
3	-	-	27	2017. 1. 2. 13:38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2분 뒤인 13:40 경기도 이천시 소재 농가에 처방
4	-	-	10	2017. 5. 2. 14:55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1분 뒤인 14:56 경기도 화성시 소재 농가에 처방
5	-	-	47	2017. 8. 29. 14:24 경기도 화성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3분 뒤인 14:27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농가에 처방
6	-	-	1	2017. 10. 25. 15:50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1분 뒤인 15:51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농가에 처방
7	-	-	132	2017. 1. 3. 16:43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4분 뒤인 16:47 충청북도 옥천시 소재 농가에 처방
8	-	-	41	2017. 1. 5. 16:19 강원도 원주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동시에 16:19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농가에 처방
9	-	-	16	2017. 5. 3. 15:42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3분 뒤인 15:45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농가에 처방
10	-	-	66	2017. 1. 3. 17:40 경기도 이천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1분 뒤인 17:41 충청북도 증평군 소재 농가에 처방하였으며, 2분 뒤인 17:43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가에 처방
11	-	-	21	2017. 4. 1. 17:12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농가에 처방 후 2분 뒤인 17:14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농가에 처방
12	-	-	53	2017. 3. 6. 17:11 경기도 포천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4분 뒤인 17:15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가에 처방
13	-	-	4	2017. 6. 20. 17:16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2분 뒤인 17:18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농가에 처방
14	-	-	1	2017. 8. 11. 10:23 세종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4분 뒤인 10:27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농가에 처방

연번	면허번호	수의사명	10분 이내 타사·도 처방 횟수	대표 사례
15	-	-	2	2017. 2. 13. 23:17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2분 뒤인 23:19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농가에 처방
16	-	-	403	2017. 1. 2. 12:17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가에 처방 후 1분 뒤인 12:18 경기도 포천시 소재 농가에 처방
17	-	-	1	2017. 2. 1. 11:5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6분 뒤인 11:56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농가에 처방
18	-	-	8	2017. 1. 2. 11:35 경기도 이천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6분 뒤인 11:41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농가에 처방
19	-	-	47	2017. 1. 26. 15:51 경상남도 창원군 소재 농가에 처방 후 4분 뒤인 15:55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농가에 처방
20	-	-	3	2017. 5. 1. 13:02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농가에 처방 후 3분 뒤인 13:05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농가에 처방
21	-	-	110	2017. 1. 5. 13:37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가에 처방 후 2분 뒤인 13:39 경기도 포천시 소재 농가에 처방
22	-	-	1	2017. 7. 11. 15:24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2분 뒤인 15:26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가에 처방
23	-	ㄸ	217	2017. 1. 2. 17:17 충청남도 청양군 소재 농가에 처방 후 3분 뒤인 17:20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농가에 처방
24	-	ㅋ	190	2017. 1. 2. 17:00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 농가에 처방 후 1분 뒤인 17:01 경기도 용인시 소재 농가에 처방
25	-	-	56	2017. 1. 23. 15:52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2분 뒤인 15:54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농가에 처방
26	-	-	3	2017. 5. 6. 13:03 전라북도 진안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8분 뒤인 13:11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농가에 처방
27	-	-	3	2017. 2. 18. 10:13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1분 뒤인 10:14 전라남도 곡성군 소재 농가에 처방
28	-	-	11	2017. 1. 24. 16:43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농가에 처방 후 2분 뒤인 16:45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농가에 처방

자료: 농식품부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7]

조사건수 500건 이상, 부적합률이 2% 미만인 품목의 안전성 조사 현황

(단위: 건, %)

구분	잔류실태조사 및 농업정책지원조사 등			생산단계 등 안전성 조사			합계		
	조사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조사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조사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쌀	4,776	7	0.1	354	2	0.6	5130	9	0.2
사과	1,418	0	0.0	337	0	0.0	1755	0	0.0
딸기	1,077	2	0.2	650	5	0.8	1727	7	0.4
포도	1,280	0	0.0	387	0	0.0	1667	0	0.0
감자	1,351	2	0.1	209	0	0.0	1560	2	0.1
양파	1,451	1	0.1	107	0	0.0	1558	1	0.1
호박	1,141	4	0.4	297	3	1.0	1438	7	0.5
토마토	1,086	0	0.0	235	1	0.4	1321	1	0.1
오이	839	1	0.1	415	2	0.5	1254	3	0.2
복숭아	839	7	0.8	411	4	1.0	1250	11	0.9
풋고추	849	3	0.4	319	5	1.6	1168	8	0.7
배	700	0	0.0	196	0	0.0	896	0	0.0
마늘	759	0	0.0	113	1	0.9	872	1	0.1
무	605	3	0.5	236	0	0.0	841	3	0.4
감귤	656	2	0.3	146	2	1.4	802	4	0.5
고구마	626	1	0.2	168	1	0.6	794	2	0.3
방울토마토	536	0	0.0	258	2	0.8	794	2	0.3
수박	713	1	0.1	72	0	0.0	785	1	0.1
양배추	674	1	0.1	43	0	0.0	717	1	0.1
매실	648	5	0.8	34	2	5.9	682	7	1.0
메론	540	0	0.0	74	0	0.0	614	0	0.0
표고버섯	525	1	0.2	61	0	0.0	586	1	0.2
당근	512	7	1.4	36	2	5.6	548	9	1.6
합계	23,601	48	0.2	5,158	32	0.6%	28,759	80	0.3%

자료: 농관원 제출자료

[별표 8]

조사건수 100건 이상, 부적합률이 5% 이상인 품목의 안전성 조사 현황

(단위: 건, %)

구분	잔류실태조사 및 농업정책지원조사등			생산단계 등 안전성 조사			합계		
	조사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조사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조사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알타리무	379	108	28.5	68	12	17.6	447	120	26.8
파세리(항미나리)	161	34	21.1	44	15	34.1	205	49	23.9
썩갓	257	38	14.8	135	37	27.4	392	75	19.1
셀러리(양미나리)	186	30	16.1	23	9	39.1	209	39	18.7
케일	240	41	17.1	27	6	22.2	267	47	17.6
참나물	46	2	4.3	56	10	17.9	102	12	11.8
취나물	199	14	7.0	271	31	11.4	470	45	9.6
부추	390	14	3.6	391	47	12.0	781	61	7.8
아욱	143	1	0.7	76	16	21.1	219	17	7.8
들깻잎	440	13	3.0	525	53	10.1	965	66	6.8
시금치	520	26	5.0	401	32	8.0	921	58	6.3
쪽파	271	13	4.8	161	12	7.5	432	25	5.8
치커리	106	0	0.0	74	10	13.5	180	10	5.6
배추	677	36	5.3	373	17	4.6	1050	53	5.0
합계	4,015	370	9.2	2,625	307	11.7	6,640	677	10.2

자료: 농관원 제출자료

[별표 9]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분석 장비 및 인력 현황

1.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동시분석 장비 보유 현황

(단위: 개)

시·도		장비명	수량	도입연도	분석가능 성분 개수
서울	-	GC	14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4, 2015	264
		LC	6	2005, 2009, 2012, 2013, 2016	
		GC-MS	4	2006, 2006, 2009, 2012	
		LC-MS	2	2008, 2012	
		GC-MS/MS	2	2016	
		LC-MS/MS	1	2017	
	-	GC	7	2004, 2008, 2014, 2015	264
		LC	5	2004, 2015	
		GC-MS	2	2004, 2012	
		LC-MS	1	2014	
		GC-MS/MS	2	2016	
	-	GC	10	2004, 2005, 2006, 2008, 2012, 2013, 2014	264
		LC	4	2006, 2007, 2014	
		GC-MS	3	2007, 2008, 2012	
		GC-MS/MS	2	2016	
LC-MS/MS		1	2015		
부산	-	GC	5	2005, 2011	213
		LC	1	2005	
		GC-MS	3	2005, 2009	
		LC-MS	1	2005	
		GC-MS/MS	1	2017	
	-	GC	6	1996, 2005, 2016	213
		LC	2	1997, 2010	
		GC-MS	2	2001, 2005	
		GC-MS/MS	1	2016	
	인천	-	GC	4	2003, 2006, 2017
LC			3	2011, 2017	
GC-MS			2	2006, 2007	
GC/TOF-MS			2	2007	
GC-MS/MS			3	2017	
LC-MS/MS			1	2010	
-		GC	5	2006, 2008, 2009, 2015	278
		LC	3	2015	
		GC-MS/MS	4	2015	
		LC-MS/MS	1	2015	

시도		장비명	수량	도입연도	분석가능 성분 개수
대구		GC	17	2000, 2005, 2006, 2008, 2013, 2015	249
		LC	4	2013	
		GC-MS	1	2013	
		GC-MS/MS	2	2013	
		LC-MS/MS	1	2013	
대전	-	GC	6	2007, 2008, 2009, 2013	164
		GC-MS/MS	2	2007, 2008	
		LC-MS/MS	1	2007	
	-	GC	4	2015	164
		GC-MS/MS	3	2015	
		LC-MS/MS	1	2015	
광주		GC	4	2004, 2005	208
		GC-MS	2	2008, 2016	
		GC-MS/MS	2	2011	
		LC-MS/MS	1	2010	
울산		GC	3	2008, 2013	192
		LC	2	2011, 2013	
		GC-MS/MS	2	2008, 2012	
		LC-MS/MS	2	2008, 2015	
세종		LC	1	2016	314
		GC	1	2016	
		GC-MS	1	2015	
		GC-MS/MS	1	2016	
		LC-MS/MS	1	2015	
경기	-	GC	5	2009, 2012, 2014, 2016	220
		LC	3	2005, 2015, 2017	
		LC-MS/MS	1	2008	
		GC/TOF-MS	1	2010	
	-	GC	6	2007	220
		LC	2	2007	
		LC-MS/MS	1	2007	
		GC/TOF-MS	1	2007	
	-	GC	4	2008	220
		LC	2	2007, 2008	
		GC-MS/MS	1	2008	
		LC-MS/MS	1	2007	
		GC/TOF-MS	1	2008	
	-	GC	4	2008	220
		LC	2	2008	
		GC-MS/MS	1	2008	
		LC-MS/MS	1	2008	
		GC/TOF-MS	1	2008	

시·도		장비명	수량	도입연도	분석가능 성분 개수
강원		GC	2	2003, 2013	193
		LC	2	1996, 1999	
		GC-MS/MS	1	2015	
		LC-MS/MS	1	2010	
충북		GC	3	2015	211
		LC	2	2017	
		GC-MS/MS	1	2013	
		LC-MS/MS	1	2017	
충남		GC	4	2006, 2013, 2015	193
		LC	3	2003, 2015	
		GC-MS/MS	4	2005, 2015	
		LC-MS/MS	1	2015	
경북	-	GC	2	2013, 2015	151
		GC-MS/MS	1	2009	
		LC-MS/MS	1	2011	
	-	GC	2	2015	158
		GC-MS/MS	3	2015	
경남		GC	4	2005, 2009, 2014	190
		LC	1	2013	
		GC-MS	1	2008	
		GC-MS/MS	1	2013	
		LC-MS/MS	1	2011	
전북		GC	2	2008	229
		LC	2	2011	
		GC-MS/MS	1	2012	
		LC-MS/MS	1	2009	
전남		GC	4	2006, 2007, 2008, 2009	246
		LC	1	2016	
		GC-MS	1	2006	
		LC-MS/MS	1	2006	
제주		GC	2	2014	241
		GC-MS/MS	1	2016	
		LC-MS/MS	1	2009	

자료: 식약처 제출자료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분석 인력 현황

(단위: 명)

시·도		인원수	근무연수(인원)
서울	-	10	3년(2), 4년(1), 7년(1), 12년(1), 13년(1), 15년(1), 21년(2), 22년(1)
	-	7	3년(1), 9년(2), 10년(2), 11년(1), 28년(1)
	-	7	8년(2), 11년(1), 21년(2), 22년(2)
부산	-	7	1년(2), 2년(1), 4년(1), 12년(1), 13년(1), 23년(1)
	-	9	1년(1), 2년(1), 5년(1), 7년(1), 8년(2), 12년(1), 14년(1), 29년(1)
인천	-	7	1년(4), 2년(2), 5년(1)
	-	7	1년(4), 2년(1), 3년(2)
대구		6	2년(1), 10년(1), 14년(1), 26년(1), 27년(1), 30년(1)
대전	-	6	4년(2), 11년(1), 16년(1), 21년(1), 23년(1)
	-	6	1년(2), 2년(1), 3년(1), 16년(1), 20년(1)
광주		6	1년 미만(1), 3년(1), 6년(1), 13년(1), 26년(1), 28년(1)
울산		5	3년(1), 4년(1), 9년(1), 14년(1), 17년(1)
세종		1	12년(1)
경기	-	6	1년 미만(2), 1년(1), 12년(2), 24년(1)
	-	5	2년(1), 7년(1), 9년(1), 11년(1), 25년(1)
	-	5	1년 미만(2), 7년(1), 9년(1), 16년(1)
	-	6	1년 미만(1), 1년(1), 7년(1), 10년(2), 14년(1)
강원		1	8년(1)
충북		1	4년(1)
충남		7	1년(4), 2년(1), 3년(2)
경북	-	3	1년 미만(1), 4년(1), 23년(1)
	-	2	2년 6개월(1), 27년(1)
경남		1	25년(1)
전북		2	3년(1), 25년(1)
전남		4	1년(1), 3년(1), 9년(1), 21년(1)
제주		1	11년(1)

주: 상기 분석인력은 부서장(팀장) 제외
 자료: 식약처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0]

농관원 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시료 중 부적합 내역

구분			수거내역		분석결과			
연번	수거 구분	품목	지원 및 지방청	수거지	검출 성분	시료채취지역 소관 지방자치단체 분석 가능 여부	검출량 (mg/kg)	허용 기준 (mg/kg)
1	생산	알타리무	충남	태안군	Metconazole	o	0.67	0.05
2	생산	알타리무	충남	태안군	Metconazole	o	0.10	0.05
3	생산	알타리무	충남	태안군	Metconazole	o	0.16	0.05
4	생산	알타리무	충남	태안군	Metconazole	o	0.64	0.05
5	생산	파세리	경기	성남시	Flufenoxuron	o	5.8	3.0
					Deltamethrin	o	0.3	0.2
					Dinotefuran	x	3.9	0.1
					Spinetoram	x	0.54	0.05
6	생산	파세리	경기	이천시	Spinetoram	x	0.09	0.05
7	생산	썩갓	충북	청주시	Chlorpyrifos	o	0.44	0.05
8	생산	부추	경북	성주군	Ethoprophos(Ethoprop)	o	0.05	0.02
9	생산	부추	경북	포항시	Carbofuran	x	0.07	0.05
10	생산	시금치	경기	남양주시	Imidacloprid	o	0.13	0.05
11	생산	시금치	경남	통영시	Carbofuran	o	0.10	0.05
12	생산	쪽파	제주	제주시	Propamocarb	x	1.7	0.2
13	유통	알타리무	경기	안양시	Diniconazole	o	0.7	0.3
					Dinotefuran	x	0.8	0.1
14	유통	알타리무	전남	무안군	Diazinon	o	0.15	0.05
15	유통	알타리무	경남	고성군	Propiconazole	x	0.60	0.05
16	유통	케일	경남	부산광역시	Imidacloprid	o	0.24	0.05
17	유통	케일	제주	제주시	Tebupirimfos	o	0.05	0.01
					Dinotefuran	x	0.4	0.1
18	유통	부추	경기	부천시	Carbendazim	o	3.6	1.0
19	유통	부추	충북	증평군	Iprodione	o	0.26	0.05
20	유통	알타리무	부산	울산광역시	Carbofuran	o	0.50	0.05
21	유통	알타리무	광주	광산구	Carbofuran	o	0.31	0.05
22	유통	부추	대전	세종시	Chlorantraniliprole	o	0.09	0.05
23	유통	부추	대구	북구	Carbofuran	o	0.11	0.05

주: 음영처리된 부분은 해당 시료가 검출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성분임
 자료: 식약처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1]

출하제한 미이행 내역

(단위: kg)

연번	도매시장	도매시장 출하내역 및 안전성조사결과 ¹⁾			출하제한기간	출하제한기간의 출하내역 ²⁾			
		출하자명	제품명	부적합통보일자		출하일자	제품명 및 종수	출하량	주요 출하 사유
1	구리시	-	참나물	2017.8.2	2017.8.1.~2017.8.31.	2017.8.2 등 4일	열무 등 3개	615	다른 품목 출하
2		-	아욱	2016.4.15	2016.4.15.~2016.5.14.	2016.4.15.	아욱	56	행정처리시차
3		ㅎ	열무	2016.6.10.	2016.6.10.~2016.7.9.	2016.6.10. 등 10일	열갈이배추10개	2,883	도매시장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에 미통보
4		-	열무(잎)	2016.8.19.	2016.8.19.~2016.9.18.	2016.8.19. 등 3일	파 등 2개	238	행정처리시차
5		-	숙갓	2017.9.8	2017.9.8.~2017.10.7.	2017.9.8. 등 2일	숙갓 등 4개	185	다른 품목 출하
6		-	숙갓	2017.7.14.	2017.7.14.~2017.8.13.	2017.7.14. 등 16일	호박 등 4개	1,265	다른 품목 출하
7		-	참나물	2015.12.7.	2015.12.9.~2016.1.8.	2015.12.9. 등 24일	파	33,865	다른 품목 출하
8		-	숙갓	2016.12.13.	2016.12.13.~2017.1.12.	2017.1.10.	열갈이	356	다른 품목 출하
9		-	숙갓	2016.12.19.	2016.12.19.~2017.1.18.	2016.12.19. 등 3일	숙갓	754	행정처리시차
10		-	참나물	2017.8.2	2017.8.2.~2017.9.1.	2017.8.4. 등 4일	아욱 등 2개	191	다른 품목 출하
11		-	고춧잎	2016.9.29.	2016.9.29.~2016.10.28.	2016.9.29. 등 9일	고추 등 2개	195	다른 품목 출하
12		-	열갈이	2017.9.20.	2017.9.20.~2017.10.19.	2017.9.20.	열갈이	129	행정처리시차
13		-	숙갓	2016.9.12	2016.9.12.~2016.10.11.	2016.9.12.	숙갓	21	행정처리시차
14		-	숙갓	2016.6.10.	2016.6.11.~2016.7.10.	2016.6.10. 등 8일	숙갓 등 8개	400	도매시장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에 미통보
15		-	시금치	2015.11.2	2015.11.3.~2015.12.2.	2015.11.3. 등 5일	시금치 등 2개	198	다른 품목 출하
16		-	숙갓	2016.9.2	2016.9.2.~2016.10.1.	2016.9.3. 등 10일	열무 등 3개	1,435	다른 품목 출하
17		-	참나물	2017.8.18.	2017.8.18.~2017.9.17.	2017.8.18.	참나물	41	행정처리시차
18		-	치커리	2017.4.7.	2017.4.7.~2017.5.6.	2017.4.7.	기타 업체	46	행정처리시차
19		표	시금치	2017.5.31.	2017.6.1.~2017.6.30.	출하내역 없음			도매시장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에 미통보
20		-	시금치	2016.2.4.	2016.2.5.~2016.3.4.	2016.2.11.	열무	160	행정처리시차
21		-	깻잎	2015.10.12.	2015.10.9.~2015.11.8.	2015.10.9.	깻잎	12	행정처리시차
22		-	열무	2016.2.2	2016.2.2.~2016.3.1.	2016.2.2.	열무	42	행정처리시차
23		-	참나물	2015.8.21.	2015.8.24.~2015.9.23.	2015.9.4.	참나물	60	-
24		-	숙갓	2015.9.15.	2015.9.16.~2015.10.15.	2015.9.22. 등 4일	시금치	107	다른 품목 출하
25		-	열무(잎)	2016.9.8	2016.9.9.~2016.10.8.	2016.9.9. 등 20일	호박 등 2개	2,808	다른 품목 출하
26		-	참나물	2015.8.26.	2015.8.26.~2015.9.25.	2015.8.26.	숙갓	67	행정처리시차

연번	도매 시장	도매시장 출하내역 및 안전성조사결과 ¹⁾			출하제한기간	출하제한기간의 출하내역 ²⁾				
		출하자 명	제품명	부적합 통보일자		출하일자	제품명 및 종수	출하량	주요 출하 사유	
27		-	알배기	2017.7.12.	2017.7.12~2017.8.11.	2017.7.12 등 16일	오이 등 3개	2,694	다른 품목 출하	
28		-	근대	2015.8.26.	2015.8.26~2015.9.25.	2015.8.26. 등 9일	상추 등 3개	170	다른 품목 출하	
29		-	얼갈이	2015.12.16.	2015.12.17.~2016.1.16.	2017.12.17.	얼갈이	50	행정처리시차	
30		-	썩갓	2017.7.10.	2017.7.10.~2017.8.9.	2017.7.10. 등 2일	근대 등 2개	67	다른 품목 출하	
31		-	얼갈이	2017.2.2.	2017.2.2~2017.3.1.	2017.2.2.	얼갈이	55	행정처리시차	
32		-	시금치	2015.9.3.	2015.9.4.~2015.10.3.	2015.9.23.	얼갈이	84	다른 품목 출하	
33		-	썩갓	2015.11.17.	2015.11.17.~2015.12.16.	2017.11.17. 등 2일	썩갓	150	행정처리시차	
34		-	시금치	2016.2.2.	2016.2.2~2016.3.1.	2016.2.2 등 11일	상추 등 3개	218	다른 품목 출하	
35		-	참나물	2017.7.4.	2017.7.5.~2017.8.4.	2017.7.5.	참나물	37	행정처리시차	
36		-	참나물	2016.10.24.	2016.10.24.~2016.11.23.	2016.10.31. 등 4일	얼갈이 등 2개	448	다른 품목 출하	
37		-	고춧잎	2017.8.8.	2017.8.9.~2017.9.8.	2017.8.9. 등 26일	상추 등 4개	3,758	다른 품목 출하	
38		-	상추	2015.10.6.	2015.10.7.~2015.11.6.	2015.10.7. 등 2일	파 등 2개	2,280	행정처리시차	
39		ㄱ ³⁾	썩갓	2017.9.18.	2017.9.20.~2017.12.19. (3개월 ⁴⁾)	2017.9.20. 등 25일	치커리 등 6개	6,080	다른 품목 출하	
40		-	비름나물	2016.10.21.	2016.10.21.~2016.11.20.	2016.10.21.	비듬	70	행정처리시차	
41		ㄷ	깻순	2016.8.10.	2016.8.10.~2016.9.9.	출하내역 없음			도매시장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에 미통보	
42		-	썩갓	2017.8.18.	2017.8.18.~2017.9.17.	2017.8.18.	썩갓	30	행정처리시차	
43		-	열무(잎)	2016.8.17.	2016.8.17.~2016.9.16.	2016.8.17.	열무	20	행정처리시차	
-		소계	43명				305회	25개 품목	62,340	-
44		수 원 시	-	오이	2017.7.10.	2017.7.11.~2017.8.10.	2017.7.11. 등 3일	오이 등 2개	745	도매시장개설자가 도매시장 법인에 늦게 통보
45			-	시금치	2016.8.22.	2016.8.22~2016.9.21.	2016.8.23.	배추 등 2개	152	행정처리시차
46	-		시금치	2017.4.24.	2017.4.25.~2017.5.24.	2017.4.26.	시금치	152	행정처리시차	
47	-		고춧잎	2015.10.16.	2015.10.19.~2015.11.18.	2015.10.21.	갓	60	법인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 누락 및 지연	
48	-		상추	2017.7.26.	2017.7.26.~2017.8.25.	2017.8.7.	상추	12	법인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 누락 및 지연	
49	-		시금치	2015.7.14.	2015.7.15.~2015.8.14.	2015.7.18. 등 3일	방울토마토	690	법인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 누락 및 지연	
50	-		근대	2016.6.10.	2016.6.10.~2016.7.9.	2016.6.24.	썩갓	180	법인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 누락 및 지연	
51	-	시금치	2017.7.31.	2017.8.1.~2017.8.31.	2017.8.22.	열무	140	법인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 누락 및 지연		

연번	도매 시장	도매시장 출하내역 및 안전성조사결과 ¹⁾			출하제한기간	출하제한기간의 출하내역 ²⁾			
		출하자 명	제품명	부적합 통보일자		출하일자	제품명 및 종수	출하량	주요 출하 사유
-	소계	8명				16회	9개 품목	2,131	-
52	안 산 시	ㄱ	케일	2016.10.19.	2016.10.20.~2016.11.19.	2016.10.20. 등 17일	케일 등 8개	1,310	출하자에게 미통보, 다른 품목 출하
53		-	고춧잎	2016.7.26.	2016.7.27.~2016.8.26.	2016.8.2	고구마순 등 2개	26	행정처리시차
54		-	깻잎	2015.9.7.	2015.9.5.~2015.10.4.	2015.9.5. 등 2일	깻잎	18	행정처리시차
55		-	알타리무 (잎)	2017.11.10.	2017.11.13.~2017.12.12.	2017.11.23.	다발무	2,900	-
56		-	부추	2016.6.27.	2016.6.28.~2016.7.27.	2016.7.2	풋고추	69	행정처리시차
57		-	깻잎	2015.9.15.	2015.9.9.~2015.10.8.	2015.9.9. 등 3일	깻잎	48	행정처리시차
58		-	알타리무 (잎)	2017.5.18.	2017.5.19.~2017.6.18.	2017.5.19.	알타리무	1,804	행정처리시차
59		ㄱ	아욱	2016.10.19.	2016.10.20.~2016.11.19.	2016.10.20. 등 11일	상추 등 6개	882	출하자에게 미통보, 다른 품목 출하
-	소계	8명				70회	18개 품목	7,057	-
총계		59명 (출하제한기간에 출하한 자: 57명, 출하내역이 없는 자: 2명)				71,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리 시차: 26건 • 다른 품목 출하: 21건⁵⁾ • 출하자에게 미통보: 2건⁵⁾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법인에 미통보 및 늦게 통보: 5건 • 법인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 누락 및 지연: 5건 등

주: 1. 출하 농산물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함

2. 출하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도매시장 법인[구리시: ●●공판장,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수원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안산시: ●● 주식회사, ●●공판장]

3. 구리시는 2017.12.14. ㄱ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ㄱ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음

4. ㄱ은 출하제한기간에 2차례(2017.7.27., 2017.9.17.) 부적합 판정을 받음

5. 중복사례임(ㄱ, ㄱ 등 2명)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별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2]

양도기축(소) 정보미연계기간(2016.1.1.~10.31.)의 규제검사 실시 현황

(단위: 두)

연번	농장주명	규제검사기간	양수도일	양도 두수	도축일	규제검사 두수
1	-	2015. 9.15.~2016. 3.14.	2016. 1.19.	1	2016. 1.28.	-
2	-	2015. 9.15.~2016. 3.14.	2016. 1.13. 등	19	2016. 1.14. 등	-
3	-	2016. 3.29.~2016. 9.28.	2016. 7.26. 등	8	2016. 7.28. 등	-
4	-	2016. 5.20.~2016.11.14.	2016. 7.22.	1	2016. 8.26.	-
5	-	2016. 4.21.~2016. 6.30.	2016. 6.13. 등	2	2016. 6.13. 등	-
6	-	2016. 6. 3.~2016.12. 2.	2016. 6. 9. 등	57	2016. 6.14. 등	12
7	-	2016. 3. 7.~2016. 9. 6.	2016. 5. 2.	1	2016. 5.30.	-
8	-	2016. 3. 4.~2016. 9. 3.	2016. 8. 8.	1	2016. 8. 9.	-
9	-	2016. 5.24.~2016.11.23.	2016. 9.12.	1	2016. 9.21.	-
10	-	2016. 3.25.~2016. 9.24.	2016. 6. 1. 등	16	2016. 6. 2. 등	-
11	-	2016. 6.24.~2016.12.23.	2016. 8.16. 등	10	2016. 8.18. 등	-
12	-	2016. 7.26.~2016.12. 6.	2016.10.21.	1	2016.10.25.	-
13	-	2016. 1.18.~2016. 7.17.	2016. 5.27.	1	2016. 6. 1.	-
14	-	2016. 7.11.~2016.12. 2.	2016. 9. 6.	1	2016. 9.12.	1
15	-	2015.12.11.~2016. 6.10.	2016. 4. 6. 등	4	2016. 4.15. 등	3
16	ㅁ	2016. 8.18.~2017. 2.17.	2016. 8.18. 등	4	2016. 8.25. 등	-
17	-	2016. 6.20.~2016. 9. 2.	2016. 8. 5.	1	2016. 8.12.	-
18	-	2015.12.22.~2016. 6.21.	2016. 1.27.	1	2016. 1.30.	-
19	-	2016. 3.31.~2016. 5.13.	2016. 4. 7.	1	2016. 4.12.	1
20	-	2016. 4.14.~2016.10.13.	2016. 7.21.	1	2016. 9.26.	-
21	-	2016. 5. 3.~2016.11. 2.	2016. 5. 9. 등	53	2016. 5.12. 등	4
22	ㄷ	2016. 6.27.~2016.12.26.	2016. 6.27. 등	50	2016. 7. 4. 등	1
23	-	2015. 8.26.~2016. 2.25.	2016. 1.19. 등	4	2016. 1.19. 등	1
24	-	2015.10.20.~2016. 4.19.	2016. 1.11. 등	2	2016. 1.28. 등	-
25	-	2016. 4.26.~2016.10.25.	2016. 6. 9.	1	2016. 8.16.	-
26	-	2016. 7.11.~2017. 1.10.	2016. 9.12.	1	2016. 9.22.	-
27	-	2016. 6.10.~2016. 8. 8.	2016. 6.13.	1	2016. 6.27.	1
28	-	2016. 6.17.~2016.10.25.	2016. 9. 5.	1	2016. 9. 6.	-
29	-	2016. 7.26.~2017. 1.25.	2016. 8.19.	1	2016. 9. 5.	-
30	-	2016. 7.18.~2017. 1.17.	2016. 8. 1. 등	2	2016. 8. 4. 등	-
31	-	2016. 8.25.~2017. 2.24.	2016. 9.21. 등	9	2016. 9.22. 등	-
32	-	2016. 1.12.~2016. 7.11.	2016. 2.11. 등	8	2016. 3.28. 등	-
33	-	2016. 3.14.~2016. 9.13.	2016. 4.18.	1	2016. 9. 9.	-
34	-	2016. 6.10.~2016.12. 9.	2016. 8.24. 등	6	2016. 8.25. 등	2
계	34개 농가			272		26

[별표 13]

양수신고 정보제공 누락기간(2016.11.1.~2017.10.31.)의 규제검사 실시 현황

(단위: 두)

연번	농장주명	규제검사기간	양수도일	양도 두수	도축일	규제검사 두수
1	-	2017. 2.15.~2017. 8.14.	2017. 3.21. 등	2	2017. 4.18. 등	1
2	-	2017. 3. 8.~2017. 9. 7.	2017. 3.16. 등	10	2017. 5.16. 등	-
3	-	2016. 9.23.~2017. 3.22.	2016.11.14.	1	2017. 1.20.	-
4	-	2017. 7.19.~2018. 1.18.	2017. 9.13.	1	2017. 9.14.	1
5	-	2016.11.23.~2017. 5.22.	2017. 1.24.	1	2017. 4.19.	-
6	-	2017. 5.29.~2017.11.28.	2017. 5.29. 등	2	2017. 5.29. 등	1
7	-	2016.10.17.~2017. 4.16.	2016.11. 3. 등	3	2017. 3. 9. 등	2
8	-	2017. 8.24.~2018. 2.23.	2017. 8.31. 등	14	2017. 8.31. 등	5
9	-	2016. 6.24.~2016.12.23.	2016.11.14.	1	2016.11.15.	-
10	-	2017. 3.31.~2017. 9.29.	2017. 5.26.	1	2017. 6.22.	-
11	-	2017. 7.17.~2018. 1.16.	2017.10.23.	1	2017.10.27.	-
12	-	2016.11.17.~2016.12.19.	2016.11.24.	1	2016.12.12.	-
13	-	2016.12.12.~2017. 6.11.	2017. 3. 6. 등	2	2017. 3.29. 등	2
14	ㅅ	2016. 8.18.~2017. 2.17.	2016. 8.18. 등	38	2016.12.21. 등	-
15	-	2016.12.28.~2017. 6.27.	2017. 4.17.	1	2017. 4.17.	-
16	ㄷ	2016. 6.27.~2016.12.26.	2016. 7. 4. 등	21	2016.11.14. 등	1
17	-	2017. 4. 7.~2017.10. 6.	2017. 8.18. 등	8	2017. 9.20. 등	-
18	-	2016.10.25.~2017. 3.28.	2017. 1.12. 등	4	2017. 1.13. 등	4
19	-	2016. 8.17.~2017. 2.16.	2017. 1. 2.	1	2017. 1.11.	-
20	-	2017. 5.24.~2017.11.23.	2017. 7. 3. 등	2	2017. 9. 7. 등	-
21	-	2017. 6. 7.~2017. 8.10.	2017. 7. 5.	1	2017. 7.28.	1
22	-	2017. 2. 7.~2017. 8. 6.	2017. 5.12. 등	2	2017. 5.29. 등	2
23	-	2016.11.30.~2017. 1.26.	2017. 1.23.	1	2017. 1.24.	-
24	-	2017. 4.11.~2017. 8.28.	2017. 6. 7. 등	2	2017. 6. 8. 등	1
25	-	2016.10.26.~2017. 3.17.	2016.10.31. 등	10	2016.11. 2. 등	-
26	-	2016.12.26.~2017. 5.16.	2017. 1.10. 등	12	2017. 1.16. 등	2
27	-	2017. 2. 6.~2017. 8. 5.	2017. 2. 8. 등	8	2017. 2.21. 등	1
28	-	2017. 8. 4.~2018. 2. 3.	2017. 9.19.	1	2017.10.13.	1
29	-	2017. 7. 4.~2018. 1. 3.	2017. 9.15.	1	2017. 9.19.	1
30	-	2017. 6.15.~2017.12.14.	2017. 8.11.	1	2017. 8.31.	-
계	30개 농가			154		26

주: 규제검사가 이루어진 건은 양도는 되었으나 양도자 명의로 도축장에 출하되거나, 양도신고가 없는 등의 사유로 규제 검사가 실시됨

자료: 축평원 및 검역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4]

수품원 및 시·군·구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 누락 명세

연번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조사주체	조사일자	위반품목	처분내용	비고
1	◀◀	ㅈ	인천광역시 서구	수품원	2014. 7. 31.	활넙치 등 3개 품목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인천광역시 서구	2015. 1. 28.	콩치	과태료 부과	
2	-	-	전라남도 장흥군	수품원	2013. 9. 12.	냉장조기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장흥군	2015. 2. 5.	송어	기타	
3	-	-	전라남도 여수시	수품원	2012. 9. 10.	전복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여수시	2015. 3. 18.	오징어	표시의 이행	
4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품원	2013. 12. 3.	활넙치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5. 4. 1.	말치	과태료 부과	
5	-	-	인천광역시 강화군	수품원	2013. 11. 19.	활꼬막 등 4개 품목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강화군	2015. 9. 7.	미더덕	과태료 부과	
6	-	-	전라남도 무안군	수품원	2012. 7. 12.	활소라 등 2개 품목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수품원	2014. 7. 23.	활낙지	표시의 이행	
				전라남도	2015. 9. 14.	소라	과태료 부과	
7	-	-	울산광역시 남구	수품원	2013. 7. 4.	냉장가오리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울산광역시	2016. 1. 26.	홍게	표시의 이행	
8	-	-	부산광역시 중구	수품원	2013. 9. 9.	마른 명태포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부산광역시 중구	2016. 1. 28.	건새우	과태료 부과	
9	-	-	전라남도 여수시	수품원	2013. 9. 13.	마른 명태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여수시	2016. 7. 5.	김	표시의 이행	
10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품원	2016. 1. 26.	조미오징어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6. 9. 2.	멸치	표시의 이행	

연번	업체명	대표지명	주소	조사주체	조사일자	위반품목	처분내용	비고
11	-	-	울산광역시 남구	수품원	2013. 8.20.	마른 명태포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울산광역시	2016. 9. 5.	마른오징어	표시의 이행	
12	-	-	인천광역시 강화군	수품원	2015. 2.25.	활가리비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6.11.21.	꽃게	과태료 부과	
13	-	-	전라남도 목포시	수품원	2014. 8.19.	새우젓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전라남도	2017. 1.16.	멸치액젓	표시의 이행	
14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품원	2016. 9. 1.	조개젓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 3.17.	밴댕이	표시의 이행	
15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품원	2013. 7. 9.	마른 쥐치포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수품원	2016. 9. 2.	조미쥐치포	표시의 이행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7. 6. 2.	쥐포	과태료 부과	
16	-	-	충청남도 천안시	수품원	2016. 8.22.	활낙지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천안시	2017. 6. 7.	고등어 등 10개 품목	표시의 이행	
17	-	-	전라남도 해남군	수품원	2015.11.26.	마른 청각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해남군	2017. 9.28.	새우젓	표시의 이행	
18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품원	2014. 7.29.	활전복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6. 1.19.	돼지고기	과태료 부과	
19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품원	2016. 9. 8.	낙지 등 3개 품목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부산광역시 기장군	2016. 9.26.	양파	과태료 부과	
20	-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2015. 1.31.	대게	과태료 부과	수품원 미공표
				수품원	2015. 9.16.	활돔(참돔)	표시의 이행	
21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5. 1.27.	아구	표시의 이행	수품원 미공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6. 3.21.	바지락	표시의 이행	
				수품원	2016. 9. 9.	냉장돔(참돔)	표시의 이행	
22	-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	2015. 8. 5.	장어	기타	수품원 미공표
				수품원	2017. 1. 9.	문어	표시의 이행	

연번	업체명	대표지명	주소	조사주체	조사일자	위반품목	처분내용	비고
23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 7. 22.	가공식품	과태료 부과	수품원 미공표
				수품원	2017. 2. 15.	미역 등 3개 품목	표시의 이행	
24	-	-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2016. 1. 20.	멍게 등 2개 품목	과태료 부과	수품원 미공표
				수품원	2017. 4. 12.	냉장홍어	표시의 이행	
25	-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2015. 9. 24.	참고막	표시의 이행	수품원 미공표
				수품원	2017. 7. 4.	활낙지	표시의 이행	
26	-	-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2016. 2. 16.	호박 등 3개 품목	과태료 부과	수품원 미공표
				수품원	2017. 7. 5.	냉동명태	표시의 이행	
27	-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 자치시	2016. 3. 22.	점성어	과태료 부과	수품원 미공표
				수품원	2017. 8. 1.	냉동오징어	표시의 이행	

자료:수품원 및 시·군·구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5]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 및 공동활용시스템 등록 현황(농축산물)

(단위: 건, %)

구분	총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9월	
	위반건수	미입력건수	미입력률	위반건수	입력건수	위반건수	입력건수	위반건수	입력건수
강원도	60	56	93.3	17	0	32	4	11	0
경기도	501	386	77.0	109	30	275	61	117	24
경상남도	47	47	100.0	15	0	26	0	6	0
광주광역시	8	8	100.0	2	0	6	0	0	0
대구광역시	22	16	72.7	6	2	11	2	5	2
대전광역시	16	11	68.8	1	0	6	4	9	1
부산광역시	168	160	95.2	53	6	63	0	52	2
서울특별시	796	459	57.7	235	102	284	144	277	91
세종특별자치시	9	2	22.2	0	0	2	2	7	5
울산광역시	31	30	96.8	13	1	7	0	10	0
인천광역시	31	23	74.2	6	1	9	4	16	3
전라남도	1	0	0.0	0	0	1	1	0	0
전라북도	6	4	66.7	0	0	4	2	2	0
제주특별자치도	26	26	100.0	5	0	11	0	10	0
충청남도	170	111	65.3	62	25	62	18	46	16
충청북도	3	1	33.3	0	0	2	2	1	0
총계	1,895	1,340	70.7	524	167	801	244	569	144

주: 1. 시·군·구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실적

2. 합동단속 시 조사주체가 농관원인 적발건수는 제외

3. 경상북도는 합동단속으로 32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하였으나 조사주체가 모두 농관원이므로 제외

자료: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제출자료 및 농관원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 입력자료 재구성

[별표 16]

공동활용시스템 미활용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공표 누락 및 과징금 미부과 명세

연번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조사주체	조사일자	위반품목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1	♣♣	ㄱㄷ	강원도 홍천군	농관원	2012. 5.23.	멥쌀	미표시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강원도	2016. 2.27.	굴 등 2개 품목		과태료 부과	
2	-	-	경기도 성남시	농관원	2012. 4.18.	쌀 등 2개 품목	미표시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성남시	2017. 3.23.	고춧가루		표시의 이행	
3	-	-	부산광역시 동구	농관원	2015. 1.28.	볶음땅콩	미표시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부산광역시	2015. 2.16.	땅콩 등 2개 품목		과태료 부과	
4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농관원	2015.10.26.	황기	미표시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 3.14.	돼지감자		과태료 부과	
5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농관원	2015.11. 3.	배추김치	미표시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 8.29.	오징어		표시의변경	
6	-	-	울산광역시 남구	농관원	2012. 4.30.	깐마늘	미표시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울산광역시	2017. 1. 9.	당근		과태료 부과	
7	-	-	울산광역시 남구	농관원	2012. 4.30.	깐마늘	미표시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울산광역시	2017. 1. 9.	생강		과태료 부과	
8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관원	2016. 1.27.	고사리	미표시	표시의 이행	시·군·구 미공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7. 9.27.	무		과태료 부과	
9	-	-	충청남도 논산시	농관원	2012. 3.22.	쇠고기	미표시	기타	시·군·구 미공표
				논산시	2015. 4.28.	쇠고기		과태료 부과	
10	♥♥	ㄱㄹ	서울특별시 동작구	농관원	2015. 9.14.	볶음참깨	거짓표시	표시의변경	시·군·구 과징금 미부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6.12. 7.	고춧가루		표시의변경	

자료: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제출자료 및 농관원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입력자료 재구성

[별표 17]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업체 내역

(단위: kg)

연번	위반 유형	조사 (적발) 일자	위반내역							
			업체명	업체 유형	주소	품목	원산지	위반내용	위반 수량 ^{주)}	처분 내용
1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6건)	11.9.	-	도소매	경기도 안성시	콩	미국	콩나물 재배 후 원산지 미표시	2	과태료
2		11.14.	-	제조	경기도 평택시	참깨	중국	원산지 미표시	10	과태료
3		11.16	-	소매	대구광역시 서구	참깨	인도	원산지 미표시	5	과태료
4		11.21.	-	제조	경기도 파주시	콩	중국	콩나물 재배 후 원산지 미표시	80	과태료
5		11.24.	-	도소매	경기도 수원시	참깨	인도	원산지 미표시	1.2	과태료
6		11.30.	-	기타	경기도 양평군	콩	중국	콩나물 재배 후 원산지 미표시	100	과태료
7	거짓표시 등의 금지 위반 (5건)	11.14.	-	제조	강원도 횡성군	콩	미국	콩나물 재배 후 중국산 거짓표시	750	형사 처벌
8		11.14.	⊙⊙	제조	전라남도 강진군	미늘	중국	국내산 거짓표시	2,400	형사 처벌
9		11.20.	★★	도소매	강원도 춘천시	콩	미국	두부 제조 후 국내산 거짓표시	9,200	형사 처벌
10		11.22.	-	제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콩	미국	두부 제조 후 국내산 거짓표시	680	형사 처벌
11		11.27	-	도매	대전광역시 동구	녹두	미얀마	중국산 녹두와 혼합 숙주나물 재배 중 국내산 거짓표시	881	형사 처벌
계		11건							14,109.2	-

주: 농산물 구입 후 재배·가공된 식품의 위반 수량을 말함
 자료: 농관원 자료 재구성

[별표 18]

2017년 10월 이후 피프로닐 설폰 부적합 판정 내역

(단위: mg/kg)

연번	소재지	농가명	검출물질	검출량	수거장소	판정일
1	전라북도김제시	-	피프로닐 설폰	0.09	유통	2017. 11. 8.
2	전라북도김제시	-	피프로닐 설폰	0.072	유통	2017. 11. 8.
3	전라북도김제시	-	피프로닐 설폰	0.026	유통	2017. 11. 7.
4	전라북도고창군	-	피프로닐 설폰	0.028	유통	2017. 11. 8.
5	전라남도나주시	-	피프로닐 설폰	0.259 0.28	유통	2017. 11. 7. 2017. 11. 8.
6	경상북도성주군	-	피프로닐 설폰	0.03	유통	2017. 11. 8.
7	경상북도의성군	-	피프로닐 설폰	0.07	유통	2017. 11. 7.
8	경상북도칠곡군	-	피프로닐 설폰	0.20	유통	2017. 11. 7.
9	충청남도예산군	-	피프로닐 설폰	0.04	유통	2017. 11. 13.
10	충청남도천안시	-	피프로닐 설폰	0.03	유통	2017. 11. 13.
11	충청남도천안시	-	피프로닐 설폰	0.06	유통	2017. 11. 13.
12	전라북도김제시	-	피프로닐 설폰	0.26	유통	2017. 11. 13.
13	충청남도천안시	-	피프로닐 설폰	0.04	생산	2017. 11. 20.
14	경상북도김천시	-	피프로닐 설폰	0.03	생산	2017. 11. 22.
15	경상북도의성군	-	피프로닐 설폰	0.11	생산	2017. 11. 22.
16	충청남도천안시	-	피프로닐 설폰	0.05	생산	2017. 11. 22.
17	경기도포천시	-	피프로닐 설폰	0.12	생산	2017. 11. 24.
18	충청남도천안시	-	피프로닐 설폰	0.10	생산	2017. 11. 24.
19	강원도철원군	-	피프로닐 설폰	0.20	생산	2017. 12. 14.
20	강원도화천군	-	피프로닐 설폰	0.10	생산	2017. 12. 14.

자료: 식약처 자료 재구성